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브라질**

2014.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브라질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브라질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브라질 연방 조세청 및 재무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 둔다.

# 목 차

I. 개 관	9
1. 일반 개황	9
2. 경제 개황	11
가.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11
나. 브라질의 수출입 동향	13
다.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동향	16
3.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교역 관계	20
4. 브라질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및 동향	23
5.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Manaus)	27
6. 브라질의 AEO 유사 제도(Blue Line 제도)	28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32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32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35
가. 지식재산권 보호	35
나. 정부조달	36
다. 서비스 장벽	37
III. 브라질의 통관 환경	39
1. 통관 행정 개요	39
가. 통관 행정 조직	39
나. 주요 통관 제도	43

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54
라. 관세특혜제도.....	64
마. 주요 항구.....	66
2. 브라질의 통관 절차.....	70
가. 수입통관 절차.....	70
나. 수출통관 절차.....	72
IV.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	74
1. SISCOMEX 등록 및 NCM 분류 단계.....	75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6
나. 업무상 유의점.....	77
2.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79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79
나. 업무상 유의점.....	80
3. 수입신고 단계.....	82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2
나. 업무상 유의점.....	82
4. 세금납부 단계.....	84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4
나. 업무상 유의점.....	85
5. 물품검사 단계.....	87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87
나. 업무상 유의점.....	88
참고문헌.....	89
〈부록 I〉 비즈니스 팁.....	90
〈부록 II〉 주요 유관 기관 정보.....	95

〈부록 Ⅲ〉 통관 관련 법령 정보.....	98
〈부록 Ⅳ〉 인증 주관기관 및 시험기관.....	104
〈부록 Ⅴ〉 재무부 조직도.....	108

## 표목차

〈표 I -1〉 브라질 국가 개황	11
〈표 I -2〉 브라질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13
〈표 I -3〉 브라질의 수출입 추이	14
〈표 I -4〉 브라질의 주요 수출국 현황	14
〈표 I -5〉 브라질의 주요 수입국 현황	15
〈표 I -6〉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	15
〈표 I -7〉 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	16
〈표 I -8〉 브라질의 연도별 FDI 추이	17
〈표 I -9〉 2014년 주요 중남미 국가의 신용평가등급	17
〈표 I -10〉 국가별 외국인 투자	18
〈표 I -11〉 對 브라질 투자 현황	20
〈표 I -12〉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수출입 현황	20
〈표 I -13〉 對 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21
〈표 I -14〉 對 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22
〈표 I -15〉 브라질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26
〈표 I -16〉 2014년 기준 브라질 AEO 공인 업체 리스트	29
〈표 II -1〉 브라질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33
〈표 II -2〉 브라질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34
〈표 II -3〉 브라질 수출입 시 필요서류	34
〈표 III -1〉 국가별 사전심사제 적용 품목	47
〈표 III -2〉 2012년 브라질 관세율체계	55
〈표 III -3〉 2012년 수입가격 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56

〈표 Ⅲ-4〉 브라질 수입 품목별 관세율.....	57
〈표 Ⅲ-5〉 공업세 인상 품목(NCM 코드).....	61
〈표 Ⅲ-6〉 브라질 수입 시 과세되는 최종가격 도출 예/우리나라 비교.....	64
〈표 Ⅲ-7〉 브라질 항구 및 소속주.....	67
〈표 Ⅲ-8〉 브라질 해운 운임표.....	69
〈표 Ⅲ-9〉 브라질 항공 운임표.....	69
〈표 Ⅲ-10〉 브라질 육상 운임표.....	69
〈표 IV-1〉 브라질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74
〈표 IV-2〉 브라질 제소 및 규제내역 .....	78
〈표 IV-3〉 자본재 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 해당 품목 HS 코드.....	86

## 그림목차

[그림 Ⅲ-1] 브라질 통관 행정 조직.....	40
[그림 Ⅲ-2] 연방조세청 조직도.....	42
[그림 Ⅲ-3] 자동발급(수입허가 불필요) 및 자동발급 불가(수입허가 필요) 물품의 통관 절차.....	46
[그림 Ⅲ-4] ANVISA 획득 절차.....	48
[그림 Ⅲ-5] 의약품의 사전수입 승인 후 수입절차.....	51
[그림 Ⅲ-6]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조회처(상: NCM 입력, 하: 세금 산정).....	60
[그림 Ⅲ-7] 브라질의 수입통관 절차.....	70
[그림 Ⅲ-8]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 과정.....	72

# I. 개 관

## 1. 일반 개황<sup>1)</sup>

- 정식 국명은 브라질연방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이며,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임
  -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유일하게 1531년부터 포르투갈 식민지에서 발전한 나라로 1822년 포르투갈 왕가(王家)를 받드는 왕국으로 독립하여, 1889년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공화제가 됨
  -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며,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나라이기도 함
  
- 인구는 2013년 12월 기준 약 2억 22만명으로 세계 5위이며, 민족은 백인(48.4%), 흑백혼혈(43.8%), 흑인(6.8%), 기타(1.2%)로 구성됨
  - 백인은 포르투갈계, 독일계, 이탈리아계, 스페인계, 폴란드계 등이며 기타 1.2%에는 일본계, 아랍계, 인디오가 있음
  
- 국토의 총면적은 8,547,403.5km<sup>2</sup>로 남아메리카 중앙부에 있는 나라임
  - 대부분 평원 지형이며, 한반도의 약 37배인 동시에 세계 5위를 기록할 만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음
  - 아마존(Amazon) 평원은 국토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며 아마존강의 길이는 7,000 km임
  
- 북부 및 북동부 일부 지방의 경우 적도성 기후를, 북동부 일부를 비롯하여 중서부와 남동

---

1) 한국수출입은행 국가정보, CIA country profile Brazil

부 일대가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남부는 아열대 기후를 보이고 있음

- 국토의 92% 이상이 남회귀선 위쪽에 위치하여 전체적으로는 열대 기후로 분류되며, Paraná, Santa Catarina, Rio Grande do Sul 등 남부 3개 주(州) 및 상파울루 주 남부 지방만이 온대 기후에 속함

□ 행정구역은 1개 연방구(distrito federal)와 26개 주(estado)로 이루어져 있으며, 브라질리아(Brasilia)에 수도를 두고 있음

- 과거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Rio de Janeiro)<sup>2)</sup>가 수도였으나, 1960년부터 브라질리아(Brasilia)로 수도를 이전함

□ 정치체제는 연방주의와 3권 분립주의 원칙에 의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통치권한을 분배하고 있으며 각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존재함

- 대통령<sup>3)</sup>이 국가수반이며, 연방의회는 양원제(상원 81석, 하원 513석)임
- 연방정부의 주요 권한은 외교 관계, 국제 교역, 이민정책 수립, 국경 관리, 국제기구 참여, 국방, 화폐 발행, 사회 발전계획 수립 등임
- 주정부는 연방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 헌법을 제정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다루어야 할 노사 관계, 환경, 조세 문제 등은 연방법과 주법이 공동으로 규정함

□ 화폐단위는 헤알(Real)<sup>4)</sup>이며,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음

- 헤알(Real)은 1994년 화폐 개혁 이후 탄생하였음
- 지폐로는 1헤알, 2헤알, 5헤알, 10헤알, 20헤알, 50헤알, 100헤알, 동전으로는 1센타보(Centavo), 5센타보, 10센타보, 25센타보, 50센타보, 1헤알이 사용되고 있음

2) 현지 발음은 히우지자네이루

3) 2014년 5월 현재 Dilma Vana Rousseff

4) 1달러당 2.34헤알(2014년 3월 기준)

〈표 I-1〉 브라질 국가 개황

항목	내용
공식 국명	브라질연방공화국(República Federativa do Brasil)
수도	브라질리아(Brasilia)
국가 형태	1개 연방구, 26개 주
국토 면적	8,547,403.5km <sup>2</sup> (한반도의 37배)
위치	남미
인구	약 2억 22만명(2013년 12월 기준)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
정부 성향	보수 온건 좌파
의회	양원제(상원 81석, 하원 513석)
인종	백인(48.4%), 흑백혼혈(43.8%), 흑인(6.8%), 기타(1.2%)
언어	포르투갈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 CIA country profile Brazil 2014

## 2. 경제 개황<sup>5)</sup>

### 가. 브라질의 주요 경제 지표

- 2010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소비 및 투자 확대에 의해 7.5%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의 경우 2.3%에 그침
  - 세계적인 경제회복 지연 및 국내 소비 감퇴가 저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sup>6)</sup>
- 2014년 브라질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1.8%임<sup>7)</sup>
  - 기존의 저성장 추세를 역전시킬 특별한 경제적 호재가 없음
  - 2014년 월드컵 개최로 인한 경기 활성화 효과보다는 경기장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같은 공공지출 확대에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sup>8)</sup>

5) 한국수출입은행, 브라질 통계청, 브라질 중앙은행

6) 외교부 중남미 자원인프라센터 동향, [브라질] 경제 2013년도 결산

7)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2조 2,000억달러로 세계 7위 수준임
  -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구매력 기준으로 프랑스와 영국을 제치고 세계 7위이며, 중남미 국가들 중 1위임
  
- 2013년 소비자 물가지수(IPCA)<sup>9)</sup>는 5.91%로 2012년 5.84% 대비 0.7% 포인트 상승함
  - 2010년 IPCA 목표치가 초과되어, 예상 물가지수를 상회한 원인은 브라질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회복으로 분석됨
  - 2011년 IPCA의 경우 6.5%를 기록하였고 2012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5.84%로 마감함
  - 2013년의 경우 연초 높은 물가상승률로 불안정하였으나 하반기에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5.91%로 마감함
  
- 2014년 4월 기준 브라질 기준금리는 11%로 브라질 정부는 금리 인상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지속해 왔으나, 향후 브라질 중앙은행은 현재 수준 유지 또는 소폭 하향 조정을 고려하고 있음
  -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 어려워져 소비 및 산업 생산이 감소하고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 있음<sup>10)</sup>
  
- 브라질 중앙은행은 달러 환율 하락(헤알화 강제)에 따라 브라질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문제 되자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음
  - 2011년 8월 달러당 1.55헤알까지 하락한 달러는 2013년 11월 달러당 2.20헤알로 상승했으며, 2014년 4월 달러당 2.22헤알임
  
- 2013년 12월 브라질 실업률은 4.3%로 2002년 실업률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8) Diário Oficial da União 기사에서 발췌

9)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10) KOTRA, 브라질 국가정보 경제동향 및 전망

- 브라질은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54만개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2월 기준 브라질 노동자 월 평균 소득은 1966.90헤알로 전년 대비 3.2% 상승했으며, 최저 임금은 2014년 4월 현재 724헤알임<sup>11)</sup>

〈표 I -2〉 브라질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단위: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경상 GDP(억달러)	24,750	22,526	20,598	21,698
1인당 GDP	12,696	11,462	10,242	10,773
경제성장률	2.7	0.9	2.3	1.7
물가상승률	6.5	5.84	5.91	5.9
실업률	4.7	4.6	4.3	6.0
대미달러환율	1.88	2.04	2.15	2.35

주: \*는 예상치

자료: 브라질중앙은행(BCB), 브라질통계청(IBGE),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브라질

## 나. 브라질의 수출입 동향

- 2013년 브라질의 대외 수출은 2,421억달러로 전년 대비 0.17% 감소하였고 수입은 2,396억달러로 전년 대비 7.38% 증가함
- 무역수지는 25억 5,800만달러로 미국의 양적 완화와 헤알화 가치 상승으로 무역이 큰 타격을 입음
  - 무역수지는 2001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2011년에는 최대 흑자를 기록한 후, 2012년부터 점차 감소세로 돌아섬
  - 브라질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11) 약 320달러

〈표 I-3〉 브라질의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152,994	-22.7	127,647	-26.2	25,272
2010	201,915	32.0	181,648	42.3	20,147
2011	256,040	26.8	226,240	24.6	29,800
2012	242,580	-5.3	224,158	-0.9	19,421
2013	242,178	-0.17	239,620	7.38	2,558

자료: KOTRA 브라질 국가정보 2014

□ 2013년 기준 브라질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일본 등이며 우리나라는 브라질의 8위 수출 대상국임

○ 2013년 브라질의 對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시장의 19.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비중은 1.9%임

〈표 I-4〉 브라질의 주요 수출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전체	256,040	242,580	242,178	100	100	100
1	중국	44,315	41,228	46,026	17.3	17.0	19.0
2	미국	25,805	26,701	24,652	10.1	11.0	10.1
3	아르헨티나	22,709	17,998	19,615	8.9	7.4	8.1
4	네덜란드	13,640	15,041	17,325	5.3	6.2	7.1
5	일본	9,473	7,956	7,964	3.7	3.3	3.2
6	독일	9,039	7,277	6,551	3.5	3.0	2.7
7	베네수엘라	4,592	5,056	4,849	1.8	2.1	2.0
8	한국	4,694	4,501	4,719	1.8	1.9	1.9
9	칠레	5,418	4,602	4,483	2.1	1.9	1.8
10	파나마	418	397	4,423	0.16	0.16	1.8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 통계 2014

□ 2013년 기준 브라질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독일, 나이지리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등임

○ 2013년 브라질의 對 중국 수입은 전체 수입시장의 15.5%를 차지하며,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하는 비중은 3.9%임

〈표 I-5〉 브라질의 주요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국명	금액			점유율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전체	226,243	223,149	239,620	100	100	100
1	중국	32,788	34,248	37,302	14.5	15.4	15.5
2	미국	33,962	32,357	36,001	15.0	14.5	15.0
3	아르헨티나	16,903	16,444	16,462	7.5	7.4	6.8
4	독일	15,213	14,210	15,182	6.7	6.4	6.3
5	나이지리아	8,386	8,012	9,647	3.7	3.6	4.0
6	한국	10,097	9,098	9,491	4.5	4.1	3.9
7	일본	78,772	7,735	7,081	3.5	3.5	2.9
8	이탈리아	6,223	6,200	6,716	2.8	2.8	2.8
9	프랑스	5,462	5,043	6,497	2.4	2.7	2.7
10	인도	6,081	5,043	6,357	2.7	2.3	2.6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 통계 2014

〈표 I-6〉 브라질 주요 수출 품목

순위	HS 코드	제품명	2013년		
			금액	증감	비중
		총계	242,178	-0.1	100
1	2601	철광석	32,491	4.8	13.4
2	1201	대두	22,812	30.6	9.4
3	2709	사탕수수당	12,956	-36.19	5.3
4	1701	원유	11,842	-7.8	4.8
5	8905	특수선박, 부선거, 시추대, 작업대	7,735	430.64	3.1
6	0207	가금류	7,201	3.6	2.8
7	2304	대두유	6,787	2.9	2.8
8	1005	옥수수	6,307	17.1	2.6
9	8703	승용차	5,484	47.2	2.2
10	0901	화학목재펠프	4,824	11.5	1.9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 통계 2014

-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철광석, 대두, 사탕수수당, 원유, 특수선박, 가금류 등임
  - 수출의 대부분을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품목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철광석의 경우 2012년에 감소하였으나 타 품목 대비 높은 점유율을 보임
  
- 브라질의 주요 수입 품목은 석유, 원유, 자동차, 트랙터, 차량부품, 천연가스 등임
  - 브라질은 산유국이지만 석유 및 원유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각각 7.3%, 6.0%를 차지하고 있음
  - 2012년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공업세(IPI)<sup>12)</sup>인상으로 완성차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지만 여전히 주요 수입품 중 하나임

〈표 I-7〉 브라질 주요 수입 품목

순위	HS 코드	제품명	2013년		
			금액	증감	비중
총계			239,620	7.3	100
1	2710	석유	17,756	8.5	7.4
2	2709	원유	16,319	21.7	6.8
3	8703	승용차	9,081	-5.0	3.7
4	8708	트랙터, 특수차량 부품	8,296	22.5	3.4
5	2711	천연가스	7,997	34.2	3.3
6	8517	전화기	5,036	26.4	2.1
7	8542	전자직접회로	4,748	14.7	1.9
8	3004	의약품	3,734	3.9	1.5
9	8529	텔레비전, 라디오, 레이더 부품	3,565	1.8	1.4
10	3104	비료	3,356	-5.4	1.4

자료: KOTRA 국가정보 2014, 브라질통상개발산업부 통계 2014

#### 다.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 동향

- 2013년 브라질 FDI 순유입액은 약 640억달러로 전년 대비 1.9% 감소함
  - 2012년 브라질 FDI 순유입액은 652억달러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

12)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p. 53 참조

간 러시아 16.6% 감소, 인도 13.5% 감소, 중국 3.4% 감소 대비 BRICs 국가 중에서는 가장 감소폭이 적음

〈표 I-8〉 브라질의 연도별 FDI 추이

(단위: 백만달러,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FDI 금액	25,949	48,506	66,660	65,272	64,045
증감률	-41	87	38	-2	-1.9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 2014년 4월 기준 S&P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로 하향조정함
  -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주요 원인은 불안정한 정치 상태로 인해 재무구조의 개선 여지가 낮은 점, 10월 대선을 앞둔 정부의 정책조정 가능성이 낮아진 점, 브라질 대외 지표 악화 등임
- 등급 하락에도 브라질은 여전히 투자적정국가에 속하며 브라질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높여 현재는 추가 강등 가능성이 적음<sup>13)</sup>

〈표 I-9〉 2014년 주요 중남미 국가의 신용평가등급

국명	S&P	Fitch	Moody's
브라질	BBB-	BBB	Baa2
아르헨티나	CCC+	CC	Caa1
멕시코	BBB+	BBB+	A3
칠레	AA-	A+	Aa3
페루	BBB+	BBB+	Baa2
베네수엘라	B-	B	Caa1
우루과이	BBB-	BBB-	Baa3

자료: Estado de São Paulo

- 외국 기업들 대부분은 상파울루 주를 비롯한 남동부 지역에 투자함

13) 브라질 재무부 자료 참고

- 상파울루 주는 브라질 전체 상업의 30%, 서비스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4,200만명의 대규모 소비시장임
  - 남동부 지역은 대규모 소비시장을 이루고 있고 산업 인프라가 발달했으며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이 용이함
- 2013년 기준 對 브라질 투자국 1위는 네덜란드로 투자금액은 총 105억달러임
- 브라질에 전통적으로 투자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영국 등으로 네덜란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투자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네덜란드 외에 미국, 룩셈부르크, 칠레, 일본 등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투자국 형태를 보임

〈표 I -10〉 국가별 외국인 투자

(단위: 백만달러, %)

국가	2013	
	투자액	비중
	총계	100
1	네덜란드	21.3
2	미국	18.7
3	룩셈부르크	10.3
4	칠레	6.0
5	일본	5.1
6	스위스	4.7
7	스페인	4.6
8	프랑스	3.0
9	캐나다	2.5
10	영국	2.4
17	한국	1.1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2014

- 반면, 브라질 인프라 부족은 FDI 유치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도와 러시아에 비해서는 브라질의 인프라가 다소 앞서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프라 부족이 외국인 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투자의 취약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인프라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브라질 행정부는 수송물류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FDI 관련 설문<sup>14)</sup>에 따르면, 브라질은 기업 활동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부대비용(Brazil Cost)이 투자 장애 요인으로 지적됨
  - 시장 진출시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복잡한 조세제도와 세관 및 통관 정책, 비효율적인 행정적 관행, 고용 및 노무관리, 환율 불안이 꼽혔음
  - 판매활동을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복잡한 세금제도와 고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이며, 이 밖에 대금회수 어려움, 가격조건 불리, 물류 및 A/S 고비용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음
  - 그 밖에 브라질의 복잡한 행정체계에 따른 불편과 브라질 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도 투자 시 고려사항이었음
  
- 2013년 우리나라의 대(對) 브라질 투자액은 약 5억 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약 36% 감소함
  - 2013년 브라질 투자로 인한 신규법인수는 31개로 2012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총투자금액은 감소함
  
- 우리나라의 대(對) 브라질 투자는 1980년대 말까지는 2건에 불과했으나 1990년대부터 브라질의 경제가 성장성과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자 역시 증가하기 시작함
  
- 특히 2011년에는 신규법인수 33개, 투자금액 11억달러로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는 등 우리나라의 브라질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짐

---

14) 브라질 투자기업 경영실태 분석, 지난 2006년 12월 KOTRA 상파울루 KBC 사무소가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3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함

〈표 I -11〉 對 브라질 투자 현황

(단위: 건, 개, 천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합계	498	145	4,939,696	713	4,487,048
2008	36	10	737,574	50	635,189
2009	30	14	114,486	64	131,721
2010	77	31	1,566,875	125	1,063,968
2011	130	33	1,047,553	182	1,163,967
2012	121	26	987,595	162	960,313
2013	104	31	485,612	130	531,89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 3.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교역 관계

- 2013년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총교역액은 약 152억달러를 기록,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약 6.7% 감소하였음
  -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수출은 96억 8,800만달러, 수입은 55억 7,3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수출은 5.8% 감소, 수입은 8.4% 감소함

〈표 I -12〉 우리나라의 對 브라질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9	5,311	-10.4	3,744	-14.5	1,567	9,055
2010	7,753	46.0	4,712	25.9	3,040	12,464
2011	11,821	52.5	6,343	34.6	5,478	18,164
2012	10,286	-13.0	6,085	-4.1	4,201	16,371
2013	9,688	-5.8	5,573	-8.4	4,115	15,261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 2013년 한국산 자동차의 對 브라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45% 감소함
  -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공업세(IPI) 증세로 수입차 가격이 인상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임
  - 또한 자동차 현지생산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직접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선박, 승용차, 평판 디스플레이,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부품 등 기술력이 필요한 제조품임
  -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2013년 기준 전년 대비 약 45% 하락하였으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13년에 전년 대비 약 73% 증가함

〈표 I-13〉 對 브라질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MTI코드	제품명	2013년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9,688,236	-5.8	100
1	7420	자동차 부품	1,503,736	34.7	15.5
2	8311	집적회로 반도체	997,956	55.9	10.3
3	8128	무선 통신기기 부품	982,747	63.5	10.1
4	8361	평판 디스플레이	862,815	2.8	8.9
5	7411	승용차	579,568	-45.2	6.0
6	8211	칼라 TV	438,152	41.6	4.5
7	2140	합성수지	321,972	23.4	3.3
8	7251	건설중장비	212,865	-37.3	2.2
9	6152	철구조물	172,513	211.3	1.8
10	8423	배전 및 제어기	170,422	870.1	1.8
11	7121	운반하역기계	131,835	88.7	1.4
12	3203	타이어	107,685	-33.1	1.1
13	8499	기타 중전기	105,295	23.8	1.1
14	2190	기타 석유화학 제품	101,752	0.0	1.1
15	8136	컴퓨터 부품	95,054	10.2	1.0
16	8223	카스테레오	91,110	279.9	0.9
17	1332	경유	83,180	-88.5	0.9
18	7131	공기조절기	78,005	91.5	0.8
19	2262	의약품	77,724	7.9	0.8
20	3109	기타 플라스틱 제품	75,613	8.4	0.8

주: MI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 브라질 월드컵,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로 평판 TV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 對 브라질 우리나라의 평판 디스플레이 수출액은 2013년 기준 8억 6,281만달러로 2011년 대비 약 51% 증가함
  
-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 품목은 철광, 사료, 박류, 천연섬유원료, 두류, 곡류, 동광 등 원재료 및 1차 산업에 속하는 제품들임
  - 특히 사료의 경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59,314%,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25% 증가하는 등 가격경쟁력으로 폭발적 수요 증가세를 보임
  - 강반제품, 철광 등은 전년 대비 각각 75%, 32% 감소하여 하락세를 보임

〈표 I-14〉 對 브라질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

순위	MTI코드	제품명	2013년		
			금액	증감률	비중
총계			5,573,117	-8.4	100
1	1120	철광	1,827,860	-32.1	32.8
2	0136	사료	1,037,505	125.1	18.7
3	0135	박류	496,133	35.4	9.0
4	0191	천연섬유원료	273,496	-27.7	4.9
5	0113	두류	233,666	11.9	4.2
6	0111	곡류	218,721	78.2	4.0
7	1130	동광	179,121	6.3	3.2
8	6181	합금철	169,025	-3.8	3.0
9	0222	가공육류	147,193	1.4	2.6
10	2511	펄프	140,630	-6.4	2.5
11	6191	강반제품	98,823	-74.5	1.8
12	0151	커피류	91,638	-31.8	1.6
13	0154	연초류	65,673	-0.9	1.2
14	0158	당류	55,535	38.1	1.0
15	1190	기타 금속광물	51,851	21.6	1.0
16	3319	기타 가죽	51,060	0.7	1.0
17	2110	기초유분	48,734	-9.0	0.9
18	0157	주류	47,616	-10.9	0.9
19	6211	알루미늄과 스크랩	24,916	89.6	0.9
20	2120	석유화학 중간원료	19,968	-	0.4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OTIS)

#### 4. 브라질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및 동향

- 현 브라질 정부의 대외정책은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 이하 MERCOSUR)<sup>15)</sup>의 양적, 질적 성장과 남남협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2년 6월 개최된 MERCOSUR 정상회의에서 베네수엘라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함
  -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중국 등의 신규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의 역내 기능 강화에 무역정책의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남미 전체 면적의 71%, 인구는 3억 6,500만명으로 중남미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 경제규모는 4조달러에 달하는 매우 큰 시장임
  - MERCOSUR는 1985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이과수(Iguaçu) 선언으로부터 출발하여, 파라과이와 우루과이가 참여(1991)한 가운데 FTA로 출범함
  - 1994년 12월 무관세 거래에 합의(일부품목 제외), 1995년 1월 MERCOSUR 관세동맹으로 출범하였음. 이후 칠레(1996), 볼리비아(1997), 페루(2003)가 준회원국으로 가입함
  
- 브라질은 MERCOSUR 이외에도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안데스 공동체(CAN)<sup>16)</sup>와 FTA를 체결함
  - 브라질-멕시코 양국 정부는 공동 성명(2010)에서, 멕시코와 800개 품목에 달하는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관세 외에도 서비스, 투자, 정부 조달, 지적 소유권을

15) Mercado Comun del Sur의 약어. 1995년 1월부터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와 MERCOSUR 관세동맹을 공식 출범시킴. 이후 베네수엘라(2007), 볼리비아(2008)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

16) Comunidad Andiana로 콜롬비아, 에콰도르, 볼리비아, 페루 등 아메리카 4개국의 경제협력체로 본부는 페루 리마에 있음

모두 포함할 것이라 밝힘

- 브라질이 남미무역지대(South American Free Trade Area, SAFTA) 창설을 주창하면서 시발된 MERCOSUR와 CAN의 연합은 FTA 체결(2008)이라는 결과를 낳음
-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MERCOSUR-EU 자유무역 재협정<sup>17)</sup>, 이스라엘과의 FTA(2010.4 발효) 등 타 경제블록과의 교역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미주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s, FTAA)는 쿠바를 제외한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나라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제안된 협정임
  - 2005년 아르헨티나 정상회의 이후 중단된 상태였으나, 최근 관세혜택 등 실효성으로 인한 재협정 논의가 진행중임
  - 브라질-EU FTA 체결을 위해, 브라질측은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EU측은 자동차 산업과 통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음
  - MERCOSUR 국가들의 對 이스라엘 무역량은 전체 무역량의 1%밖에 차지하지 않으나, 이스라엘과의 FTA는 MERCOSUR가 중남미 역외 국가와 최초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인도-남아공 관세동맹(SACU) 및 걸프협력협의회(GCC)와 조속한 FTA 체결 예상됨
  - 인도, 남아공, 브라질 3개국을 하나로 묶는 통상, 투자, 과학기술, 에너지 등 분야의 IBSA 포럼을 개최함
  - MERCOSUR 회원국과 남아공, 보츠나와,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인도 등이 참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지대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12월,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이하 GSTP)을 체결함
  - MERCOSUR 국가와 한국, 이집트, 인도네시아, 모로코, 말레이시아, 쿠바, 인도 등 11개 국가가 포함됨

17) 1995년 말 MERCOSUR-EU 간 FTA 체결 노력이 시도되었고, 수차례 협상실패 끝에 2005년부터 협상이 재개됐으며 2006년 브라질에서 협상을 가짐

- GSTP 주요 내용은 브라질을 포함한 MERCOSUR 회원국이 총수입품목수의 70%에 달하는 6,367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20% 인하시킨다는 것임
- 주요 수혜품목은 브라질의 현지 생산이 약하거나 수입 수요가 높은 전기·전자부품, 기계류, 정밀기기, 철강 및 철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선박, 철도차량,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등임<sup>18)</sup>
  
- GSTP는 개도국 간에 체결된 협정으로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수입관세 인하 대상 품목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브라질과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 브라질의 무역정책은 양자 간 무역협정 비중을 높일것으로 추측됨
  -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어젠다(DDA) 등 다자 협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역상대국과 각료회담 형식으로 통상 분야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브라질과 양자 FTA 협약은 없으나, 한-MERCOSUR 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음
  - 4차례에 걸친 공동연구<sup>19)</sup> 끝에, 2009년 7월 한-MERCOSUR 간 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공동협약체 설립 양해각서(MOU)에 서명함

---

18) <부록> 참조

19) 2004.11. 대통령 남미순방시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정상과 공동연구 개시 합의  
 2005.5.4.-5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1차 회의(아순시온, 파라과이)  
 2005.8.17.-18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2차 회의(서울, 한국)  
 2006.3.2.-3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3차 회의(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2006.10.31.-11.01 한-MERCOSUR TA 공동연구 제4차 회의(브라질리아, 브라질)

〈표 I -15〉 브라질의 무역협정 체결 현황

대상국	협상 타결 일자	추진 현황
자유무역협정(FTA)		
메르코수르 - 이스라엘	2007.12.18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이집트	2010.8.2	기체결(미발효)
메르코수르 - 팔레스타인	2011.12.20	기체결(미발효)
경제보완협정		
브라질 - 우루과이	1983.6.20	기체결(발효)
브라질 - 아르헨티나	1991.3.15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칠레	1996.11.19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볼리비아	1997.5.28	기체결(발효)
브라질 - 멕시코	2002.9.23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멕시코	2003.2.18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멕시코 (자동차)	2002.11.5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페루	2005.12.29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콜롬비아/ 에콰도르/베네수엘라	2005.1.31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쿠바	2006.7.21	기체결(발효)
브라질 - 기아나	2003.8.15	기체결(발효)
브라질 - 수리남	2005.10.24	기체결(발효)
메르코수르 - 인도	2009.6.1	기체결(발효)
무역특혜협정		
SACU	2009.4.3	기체결(미발효)
관세특혜협정		
ALADI	1984.12.28	기체결(발효)
추진 중인 협정		
FTAA	-	2005.12월 아르헨티나 Mar del Plata 정상회의 이후 중단됨
GCC	-	현재 협상 재개 준비중임
EU	-	2004년 10월 이후 DDA 협상과 연계되어 협상이 중단되다 2010년 하반기부터 협상 재개 후 다시 잠정 중단. 2013년 FTA 체결을 희망하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EU와의 대화 재개
SCU, 인도	-	2007년 10월 제2차 인도-브라질-남아공 정상회의 시 톨라 대통 령이 제안함
기타		
브라질-멕시코	2002.7.3	부문별 특혜협정(식품, 의류, 광물 등) (MERCOSUR 회원국은 제3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할 수 없으 나 ALADI 회원국과는 양자협정 체결 가능함)

주: 1. CAN: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

2. SACU: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등 5개국

3.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등 6개국

자료: 브라질 개발상공부

## 5.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de Manaus)<sup>20)</sup>

- 마나우스(Manaus)는 서부 아마존 지역 아마조나스(Amazonas)의 수도로 1967년 아마존 지역 종합 개발 및 고용증대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로 설립됨
  - 현재 약 600개가 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진출해 있음
  - 법령 356/68, 8387/91에 근거<sup>21)</sup>하며 개발상공부(MDIC) 산하 SUFRAMA (Superintendencia de Zona Franca de Manaus)가 관리함
  
-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이하 ZFM)는 공업, 농축산업, 상업 등 3개의 대형 전문 산업단지로 구성되어 있음
  - 공업단지의 경우 약 459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업종은 전기전자, 오토바이, 생활용품, 정보통신 제품 등임
  
- ZFM의 조세 인센티브는 수입관세·법인세 감면, 공업세·사회통합기여세 면제, 주유통세 세액공제 등이며 특혜기간은 2023년까지 적용됨<sup>22)</sup>
  - 수입세는 평균 11%에서 최대 35%까지 감면되며 자본재가 유입될 경우 면제됨
  - ZFM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공업세가 전액 면제됨
  - 법인세는 최대 75%까지 감면 가능하나 감면액은 브라질에 재투자해야 함
  - ZFM 외의 지역에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3.65% 적용됨
  - 주유통세는 판매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55~100% 세액공제 가능하며 소비재의 경우 공제율이 적고 원자재류의 경우 공제율이 높음
  - 마나우스 공단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국내생산 요건의 만족과 SUFRAMA(마나우스 경제특구 관리청) 승인이 필요함
  - 이 외에도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 10년간 재산세, 환경세,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20) [www.suframa.gov.br](http://www.suframa.gov.br) 참조

21) Decreto-lei nº 288, de 28 de fevereiro de 1967 참조

22)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참조 p. 58

- 감세혜택 이외에도 사업비용 혜택 및 물류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별도의 입주비용 없고, 공장 설립시 약 1달러/m<sup>2</sup>로 매우 저렴한 비용이 듦
  - 운송 및 물류에 있어 아마존강은 수심이 깊어 컨테이너선이 공단지역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바로 연결되어 있으며, 창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이 갖춰져 있어 물류시설도 충분한 편임

## 6. 브라질의 AEO<sup>23)</sup> 유사 제도(Blue Line 제도)

- 브라질 AEO 제도의 공식명칭은 Linha Azul(Blue Line)로 안보 제고와 신속한 통관을 위한 성실기업 우대제도임<sup>24)</sup>
  - WCO의 SAFE Framework의 일환으로 미국은 C-TPAT, EU 지역은 AEO로 불림
  - 공인대상은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를 지정하고 있으나, 수입자 위주의 제도로 법규 준수와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제도임
  
- 2010년 11월 기준 동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39개 업체가 공인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공인(Consórcio)을 받았음
  - 공인기준<sup>25)</sup>에 따라, 24개월간 법인으로 국가에 등록되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2개월 이전에 1천달러 금액 이상의 거래가 있어야 함
  - 또한 주요 경제활동이 제조업, 광업, 가공, 광물의 추출을 지원하는 활동은 제외되며 의무준수, 서류, 세금 및 관세의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내부통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Blue Line 제도의 혜택은 세관검사 축소, 검사 시 우선검사, 세관 통관 등록 시 즉시통관 채널 확정, 통관 전 세관 보세창고에 항공화물 저장 불필요 등을 들 수 있음

23)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 공인업체

24) 2008년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2011년 시행됨

25) 국세청의 준수사항 및 법률 제9,430항, 제4,544항에 의거

- 수출입 물품 장치기간이 감소되거나 화물검사 없이 바로 통관되어 통관에 하루밖에 소요되지 않는 Green Channel을 이용할 수 있음<sup>26)</sup>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항 내 보관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 물품통관 후 세관서류를 정정할 수 있어 오류발생시 수정 가능함
  - 안전한 물품 확보를 위한 재고가 감소되어 회사의 비용이 절감됨
- 만약 공인 획득 후, 법률을 위반하면 5일간 혜택을 정지하거나 혜택의 지정을 취소 또는 벌금이 부과됨
- 취소되면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재신청이 가능함
  - 재신청 시 모든 신청자격 요건을 구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 2014년 기준 브라질 정부 AEO 공인을 받은 기업은 총 48개 업체이며, 자동차, 전자, 부품, 항공기 등의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임

〈표 1-16〉 2014년 기준 브라질 AEO 공인 업체 리스트

	회사명
1	3M do Brasil Ltda,
2	Andreas Stihl Moto Serras Limitada,
3	Basf S/A
4	Behr Brasil Ltda
5	Caterpillar Brasil Ltda
6	CNH Latin America LTDA
7	Continental Brasil Indústria Automotiva Ltda
8	Coteminas S,A
9	Cummins Brasil Ltda
10	Dell Computadores do Brasil Ltda
11	Denso do Brasil Ltda
12	DOW Brasil Sudeste Industrial LTDA
13	Dupont do Brasil S/A
14	Dynapac Brasil Indústria e Comércio Ltda
15	Eaton Ltda

26) <http://www.receita.fazenda.gov.br/Legislacao/Ins/2004/in4762004.htm> 참조

〈표 I -16〉의 계속

	회사명
16	Embraer Empresa Brasileira de Aeronáutica S/A
17	Ericsson Telecomunicações S/A
18	Farmoquímica S/A
19	Foxconn Cmmsg Indústria de Eletrônicos Ltda
20	GE Celma Ltda
21	Honda Automóveis do Brasil Ltda
22	IHARABRAS S.A.
23	Jabil do Brasil Indústria Eletroeletrônica Ltda
24	Johnson & Johnson do Brasil Indústria e Comércio de Produtos para Saúde Ltda
25	Komatsu do Brasil Ltda
26	Magneti Marelli Sistemas Automotivos Indústria e Comércio Ltda
27	Maximiliano Gaidzinski SA
28	Motorola Industrial Ltda
29	Nissan do Brasil Automóveis Ltda
30	Nokia do Brasil Tecnologia Ltda
31	Novozymes Latin America Ltda
32	Nutron Alimentos Ltda
33	Peugeot-Citröen do Brasil Automóveis Ltda
34	Renault do Brasil S.A.
35	Robert Bosch Ltda
36	Rolls Royce Brasil Ltda
37	Samsung Eletrônica da Amazônia Ltda
38	Sanmina-SCI do Brasil Integration Ltda
39	Siemens Enterprise Communications - Tecnologia da Informação e Comunicações Corporativas Ltda
40	Solvay Indupa do Brasil S/A
41	Tavex Brasil S/A
42	Tetra Pak Ltda
43	Toyota do Brasil Ltda
44	Turbomeca do Brasil Ind. e Com. Ltda
45	Volkswagen do Brasil Ltda
46	Volvo do Brasil Veículos Ltda
47	Yamaha Motor da Amazônia Ltda
48	Whirlpool S.A.

주: 2014년 4월 기준  
 자료: 브라질 연방조세청 홈페이지

- 우리나라 관세청은 브라질과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 고위급 협력회의를 주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0년 제1차 한-브라질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브라질 진출 우리나라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방안,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 브라질 관세청 연락관 파견 등의 사안에 대해 논의함
  - 2012년 우리나라-브라질 양국간 고위급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해 논의함

## Ⅱ.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 1.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5년에 발간된 당해 보고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을 수록함
  -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짓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전력 수신(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investors),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 및 청산(Closing a business) 등 10개의 지표임
  -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 순위에서 있어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5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상 무역 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2015년 무역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과 같이 3위에 오름
  
- 「Doing Business 2015」에서 브라질은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9개국 중 120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

역 분야에서는 123위를 기록함

- 지난 해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14」와 비교했을 때 종합적 사업의 용이성 순위는 3순위 상승하였고, 무역 분야 순위 역시 3순위 상승하였음

〈표 II-1〉 브라질의 무역 분야 순위 비교

구분	브라질	중남미	OECD	인도	중국	한국
수출 필요서류(개수)	6	6	4	7	8	3
수출 소요 시간(일)	13	16.8	10.5	17.1	21	8
수출 소요 비용(달러/컨테이너)	1,925	1,299.1	1,080.3	1,332	823	670
수입 필요서류(개수)	8	7	4	10	5	3
수입 소요 시간(일)	17	18.7	9.6	21.1	24	7
수입 소요 비용(달러/컨테이너)	1,925	1,691.1	1,100.4	1,462	800	695
무역 분야 순위	123	-	-	126	98	3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RANK

- 브라질에서의 해상 수출 비용은 컨테이너당 약 1,92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6가지,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에서의 업무를 포함, 수출에 총 1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해상 수입에 있어서 컨테이너당 약 1,925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포함한 수입 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17일이 소요됨
- 브라질 무역 분야 순위가 낮은 원인은 수출입 소요 비용이 타국 대비 월등히 높기 때문임
  - 수출 필요서류 및 시간은 경제규모 및 성장력이 유사한 신흥경제국과 큰 차이가 없으나 수출입 소요 비용이 중국의 약 3배 이상, 인도의 약 1.6배인 점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음

〈표 II-2〉 브라질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구분	수출		수입	
	소요 기간	비용	소요 기간	비용
서류 준비	6	325	8	275
세관 통관	3	400	4	450
항만(터미널)	3	500	3	500
내륙 운송	1	700	2	700
합계	13	1,925	17	1,925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Brazil(상파울루 기준)

- 최근에는 이러한 무역 환경상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예상되고 있음
- 국제기구나 국제 경영 컨설팅 업체로부터 ‘브라질 코스트’ 개선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면서 정부부처 간 협력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표 II-3〉 브라질 수출입 시 필요서류

수출 시 필요서류	수입 시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ill of Lading(선하증권)</li> <li>○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li> <li>○ Packing list(포장명세서)</li> <li>○ Customs export declaration (수출신고서)</li> <li>○ Export Invoice(Nota Fiscal)(수출송장)</li> <li>○ Technical standards/Health certificate(기술 기준통합증명서/검역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nk document(은행 서류)</li> <li>○ Bill of lading(선하증권)</li> <li>○ Cargo release order(화물반출지시서)</li> <li>○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li> <li>○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li> <li>○ Entry Invoice(Nota fiscal)(반입송장)</li> <li>○ Packing list(포장명세서)</li> <li>○ Technical Standards/Health certificate(기술 기준통합증명서/검역증명서)</li> </ul>

자료: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 Brazil」

##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4년 보고서는 미국의 58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sup>27)</sup>
  
- 브라질은 Lula 정부 이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 및 개방경제 정책을 중단하고 국내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대체 산업을 확장하는 국내생산촉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브라질은 1995년부터 통신·전력·항만·석유개발 분야 등에 외국 자본 참여를 허용하고, 내외국인 차별을 철폐한 이후 외국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2년 653억달러의 FDI 순유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당해 세계 외국인 투자 순위 4위임
  
- 브라질은 현재 복잡한 세금, 부족한 인프라, 노사문제 등 브라질 코스트로 인한 산업경쟁력 약화가 브라질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가. 지식재산권 보호

- 브라질은 아직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저작권조약을 맺고 있지 않음
  - 단, 지식재산권 관련 베른 협약, 워싱턴 협약, 파리 협약 등에 서명한 바 있음

---

27) 20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 브라질은 1998년 법률 제9610호 및 소프트웨어법을 공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저작권 보호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음향 및 영상 상품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바, 최근 브라질 상업연맹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많은 양의 불법 복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품목은 CD로 나타남
  
- 브라질의 특허와 상표권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보호법은 1997년 발표되어 지식재산권 보호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브라질은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많은 노력을 실시하여 발전하고 있음
  -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불법 복제 및 위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 복제가 증가하고 있음
  
-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음

## 나. 정부조달

-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WTO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브라질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 브라질 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기업은 정부조달에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종종 브라질 대기업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이 일반적임
  - 이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브라질의 기업이 국내에서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기업에 관련 서비스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외국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브라질의 전문기업이 없는 경우에만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입찰 참여 가능

- IT 제품을 제외하고 정부조달에 관해 국내외기업에 대한 무차별을 규정<sup>28)</sup>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 입찰 시 국산품 구입정책(Buy National Policy)을 시행하고 있음
  - 정부조달 시 외국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품에 대한 특혜 세제(Margins of Preference)를 적용하고 있음
    - 의류 및 신발류 20%, 굴착기 18%, 모터 그레이더 10%, 의약품류 5~25%, 철도차량 20% 등임
  
- 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IT 관련 제품 정부조달은 브라질 내 투자기업 외에는 외국기업의 시장접근이 매우 어려움
  - 정부조달에 관한 대통령령<sup>29)</sup>은 연방 및 지방정부 조달에 있어 국내기업에 유리하도록 복잡하고 불투명한 가격 및 기술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최근 정부조달 사업의 무차별 정책 도입 확산으로 인해 정부조달 시장의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 국제개발은행 차관과 관련된 구매입찰의 경우 브라질 내에 법인을 세우면 외국기업에도 개방하여 입찰에 부치는 등 정부조달 시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음
  - 특히 주정부 차원에서 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관련 국제 입찰이 늘어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민관협력프로젝트(PPP)를 통해 도로 및 철로건설, 수도시설 확충, 전력공급 등 인프라 부분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 입찰을 늘리고 있음

#### 다. 서비스 장벽

- 브라질에 대한 서비스 수출은 제한적인 투자진출법, 행정절차의 투명성 결여, 법규의 자의적인 적용, 특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자본 참여 제한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

---

28) 브라질 법률 제8,666호

29) 브라질 대통령령 제1,070호

- 브라질은 2002년 법률 제10,610호를 제정하여 브라질 내 인쇄 및 공중파 TV 방송 미디어 사업에 외국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음
  - 참여지분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프로그램의 80%는 국내 영상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음
  
- 브라질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은 1996년 외국인에게 개방되었으나, 1997년 제정된 일반 통신법은 외국인의 통신시장 참여에 있어 지분을 제한하고 있음
  - 1998년에는 국영전화사인 Telebras가 외국인 지분 참여 허용과 함께 민영화됨
  - 고정회선 분야 등의 접속료를 포함하여 불리한 사항들은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기업의 진입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음
  
- 외국의 특송서비스 업체는 높은 수입관세 및 부분적인 자동특송통관시스템, 너무 낮은 최소허용 예외수준 등의 수많은 장벽으로 인해 브라질 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수입되는 모든 특송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위해 60%의 균일 관세율을 부과
  - 또한 브라질 세관은 특송서비스를 이용한 수입에 대해 최대 5,000달러, 수출의 경우 최대 3,000달러로 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 브라질 보험시장은 최근에 남미의 가장 큰 보험시장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 1996년에 브라질 정부는 이 분야의 국내외 지분참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함
  - 미국의 보험회사들은 기존에 설립된 보험회사들과 합작하여 브라질 보험시장에 대거 진출함
  
- 브라질은 은행, 증권 서비스를 비롯한 비보험 금융 서비스 산업을 대상으로 WTO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신금융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외국소유 은행의 확장을 제재하고 있음

### Ⅲ. 브라질의 통관 환경<sup>30)</sup>

#### 1. 통관 행정 개요

##### 가. 통관 행정 조직

- 브라질의 수입허가, 통관, 외환관리 등 수출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대외무역국(SECEX)<sup>31)</sup>, 연방 세무국(RFB)<sup>32)</sup>, 중앙은행(BCB)<sup>33)</sup> 3개 조직임
  - 국가통화위원회(CMN)<sup>34)</sup>는 개발상공부, 재무부, 중앙은행을 관리·통제함
  - 대외무역국은 개발상공부(MDIC)<sup>35)</sup> 산하 기관으로 재화나 서비스의 대외거래를 관장하는 정책 실무를 담당함
  - 연방조세청은 재무부(RF)<sup>36)</sup> 산하 기관으로 세금 징수를 포함한 관세 행정을 책임짐
  - 중앙은행은 대외거래에 관한 모든 금융활동을 감독 및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

30) 브라질 국가통화위원회, 브라질 개발상공부, 브라질 재무부, 브라질 중앙은행, 브라질 통계청

31) Secretaria de Comercio Exterior

32) Receita Federal do Bras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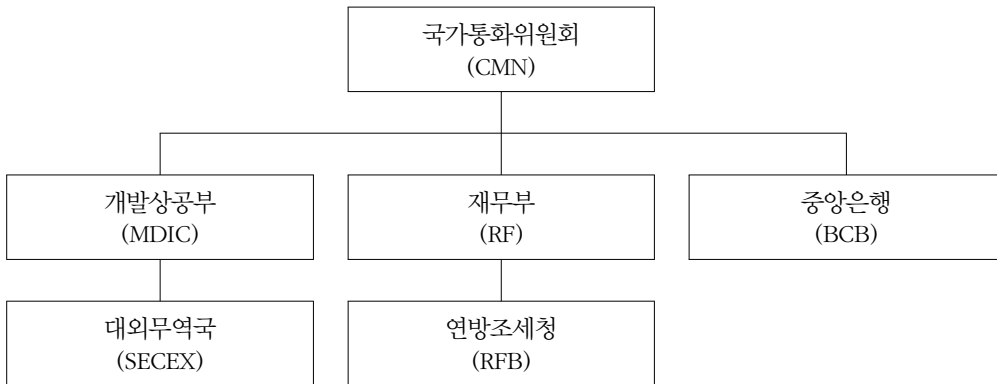
33) Banco Central do Brasil

34) National Monetary Council

35) Ministerio de Desenvolvimento, Industria e Comercio Exterior

36) Ministerio da Fazenda, 〈부록 IV〉 재무부 조직도 참고

[그림 Ⅲ-1] 브라질 통관 행정 조직



자료: 브라질 연방조세청 홈페이지

-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재무부 산하 연방세무국(Secretariat of the Federal Revenue of Brazil)<sup>37)</sup>임
  - 현재 브라질 연방조세청의 모체는 SENAFRA(National Service for the Supervision of Customs Income)로 1960년에 세워짐
  - 최초 설립목적은 공정한 조세행정과 관세를 통제하고 전체 사회 안정을 위하여 우수한 조세 및 관세 행정 기관을 추구하는 것임
- 연방조세청은 독립기관으로 크게 중앙부서(Central Units)와 자치부서(Decentralized Units)로 나뉨
  - 중앙부서는 내무행정국, 내무회계감사국, 기획·구성·평가국, 언론자문국, 의회업무국, 항공운영국, 조세청장실, 특수자문국, 위험관리국, 대외업무국, 연구조사국, 세금정책국, 예측분석국 등이 있음
  - 자치부서는 사법처리담당국, 지역사무소, 특수감사과, 세관 등이 있음
- 연방조세청은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함
  - 국경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및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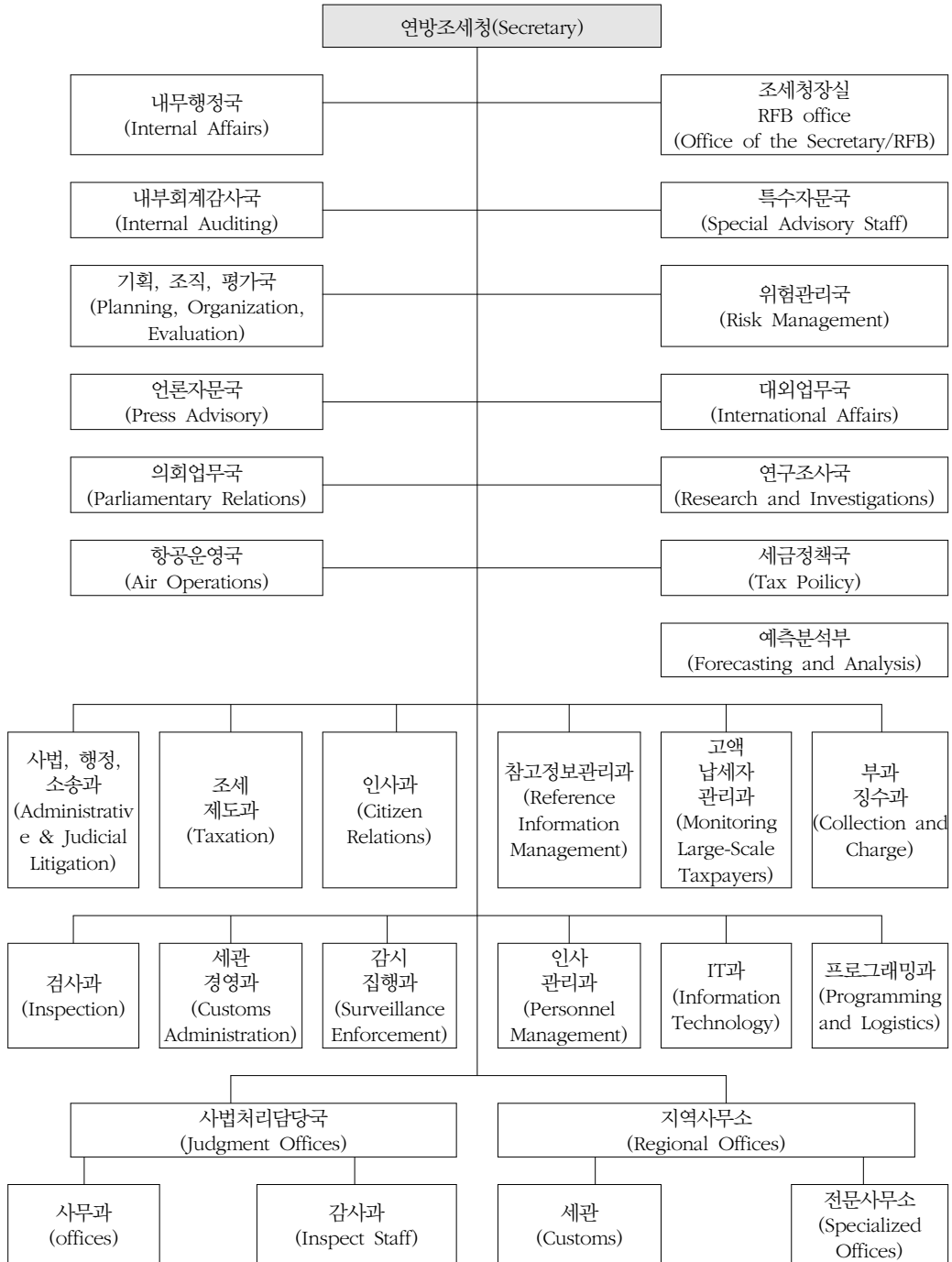
37) Receita Federal do Brasil

- 법에 의한 벌금, 부과금 등의 부과, 안보를 위한 조치
  - 자국법에 따른 국제무역의 통제
  - 연방 내 및 해외무역 조세 관리 감독
  - 세금 징수, 회계, 행정적 과세, 감사, 리서치, 조사, 통제 활동 관리 및 집행
  - 관세 행정, 감사 및 통제 관리 및 집행
  - 연방정부 세금 공제 정의 및 징수 관련 행정 프로세스 결정 및 준비
  - 연방 조세 및 관세 입법안 제안의 해석, 적용, 퇴고
  - 조세 및 관세 정책 구성 관련 보조 정보
  - 연방 정부 세입 및 조세 이익 예산 퇴고를 위한 보조 정보
  - 품목분류와 가격에 대한 심사
  - 탈세, 밀매매품, 밀수입, 위조품, 무역사기, 불법무역거래를 통한 마약 및 멸종위기 동물 거래 방지 및 대응
- 지방세관은 브라질 전역에 걸쳐 총 27개임
- Distrito Federal(연방구)<sup>38)</sup>, Acre, Maranhão, Rio de Janeiro, Alagoas, Mato Grosso, Rio Grande do Norte, Amapá, Mato, Grosso do Sul, Rio Grande do Sul, Amazonas, Minas Gerais, Rondônia, Bahia, Pará, Roraima, Ceará, Paraíba, Santa Catarina, Paraná, São Paulo, Espírito Santo, Pernambuco, Sergipe, Goiás, Piauí, Tocantins 임

---

38) Brasília

[그림 Ⅲ-2] 연방조세청 조직도



자료: 연방조세청 홈페이지

## 나. 주요 통관 제도

### 1) 브라질 국산부품 사용의무화 제도

- 브라질 정부는 현지 부품 의무사용 법규(기초생산공정/Processo Produtivo Basico, PPB)<sup>39)</sup>를 제정하여 유지해 오고 있음
- 동 법규에 따라 브라질 국산부품이 일정부분 쓰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부품사용의 20% 정도 수준임
- 현지생산으로 감세 혜택을 받는 PC, TV, 휴대전화에 대해 국산부품 사용의무를 확대할 계획임
  - 동 제도의 시행강화에는 2010년 반도체, IT, 전자통신 부품 수입에만 123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자기기 산업의 무역적자폭이 확대된 점이 주요했음
- PC 제품은 생산 초기 국산부품 사용비중이 20%였지만 점차 비중이 높아져, 2014년까지 전체 부품의 80%를 국산부품으로 채운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국산부품 의무 사용비중 증가는 태블릿 PC 생산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짐
- 자동차의 경우 브라질 국내 생산부품 의무사용 비중을 현재의 65%에서 2017년에는 70%로 상향 조정함
  - 2017년부터 70%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자동차에는 공업세를 인상(30%p)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국내 생산부품 사용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sup>40)</sup>

39) Lei n.º 8.387, 1991년 12월 30일 제정, [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8387.htm](http://www.planalto.gov.br/ccivil_03/Leis/L8387.htm) 확인

40) KOTRA globalwindow 브라질편 기사 참조

- ‘자동차산업 혁신정책’(Inovar-Auto)<sup>41)</sup>에 따르면 제조공정의 현지화 또는 R&D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자의 경우 공업세를 감면해줌
- 디램(DRAM)은 사용의무비율이 60%에서 내년 80%로 늘어나고 낸드(NAND)<sup>42)</sup>의 경우에도 30%에서 50%로 확대됨

## 2) 수입허가 제도(Licença de Importação)

- 브라질 수입통관은 물품에 따라 ① 수입허가(Licença de Importação, 이하 LI)가 불필요하여 자동 수입신고 되는 물품과, ②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으로 구별됨
  - ① LI 자동발급 품목의 경우, 수입허가는 수입신고 시 자동으로 발급됨
  - ② LI 자동발급 불가품목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
- LI 필요 여부는 수입품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 통관이 결정됨
  - LI 자동발급이 불가한 제품은 사전통제 및 수입제한 품목으로 인간 및 동·식물에 피해를 주는 제품,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 할당관세 적용 물품임
- 사전수입 심사제를 통해 수입허가를 발급받을 경우 약 60일이 소요되며, 수입허가의 유효기간은 수입허가 승인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함
  - 만약 수입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원할 경우 만기 90일 이전에 연장요청해야 함<sup>43)</sup>
- 관세환급, BEFIEX<sup>44)</sup>, CNPq<sup>45)</sup>, ZFM<sup>46)</sup> 제도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도 사전 수입허가가

41) Lei nº 12.715 - INOVAR-AUTO

42) 휴대용 전자제품에 쓰이는 플래시메모리

43) art. 24, § 1º, da Portaria Secex nº 23/2011

44) 수출용 자재로 수입되는 품목들에 대한 관세 감면 혜택 제도

45) importações sujeitas à anuência do Conselho Nacional de Desenvolvimento Científico e Tecnológico, 과학기술개발위원회 수입물품

필요함<sup>47)</sup>

- S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은 이에 해당함
- 수입 자동 허가 제외 품목(선적 전 수입허가서 요망 품목)
  - 관세 환급 대상 품목
  - 관세 감면 혜택 대상 품목
  - 수입 쿼터 대상 품목(섬유, 자동차 등)
  - BEFIEEX 프로그램을 적용받고 있는 회사들이 수입하는 품목
  - 브라질 과학기술개발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는 품목
  - 모든 중고 상품
  -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는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한 품목(중고 기계 및 장비)
  - 이라크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 브라질의 무역자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수입되는 품목
  - 무가 상품(샘플, 기부품, 일시적 체류, 인체 및 동물 연구 용품, 정신질환 치료제, 군수품, 방사능물질, 원유, 원유가공품, 환경유해물질, 항공기 등)
- 수입허가서가 불필요한 경우, 해당 관리국의 사전 검사가 불필요하며 자동 수입신고 처리되어 통관 완료됨
- 수입허가서가 필요한 경우, 즉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을 위한 브라질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 전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허가서는 농림부, 보건부, 환경부 등 수입품에 따른 담당기관에서 발급되며, 위생과 안전에 관련한 허가를 포함해 기술 인증 등 상이한 내용을 포함함
- 단, 수입허가(LI)가 수입신고(DI)와 연결되지 않으면 SISCOMEX 시스템에 의해 자동 취

46) Zona Franca de Manaus, 마나우스특별경제구역

47) SISCOMEX 행정조치표에 열거, § 1o do art.17 da Portaria Secex nº 23/11  
<http://www.mdic.gov.br/sitio/interna/interna.php?area=5&menu=3175> 참조

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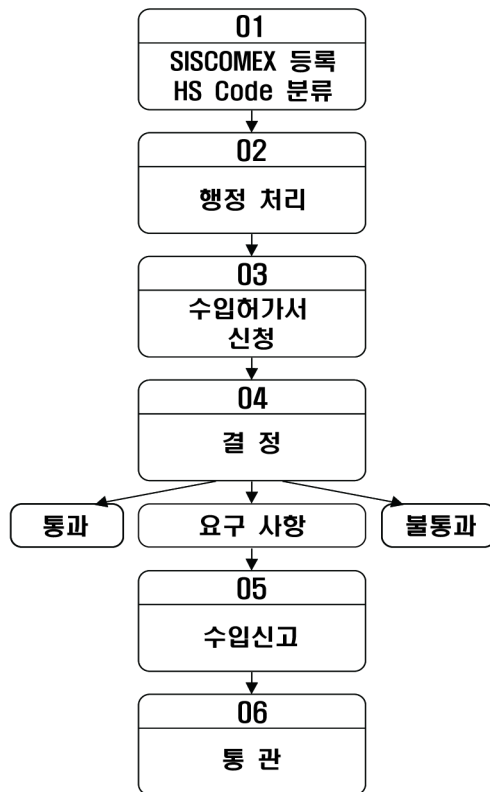
- 수입허가서(LI) 서류 변경은 물품 통관 전 시점까지 가능함<sup>48)</sup>

[그림 Ⅲ-4] 자동발급(수입허가 불필요) 및 자동발급 불가(수입허가 필요) 물품의 통관 절차

〈수입허가 불필요시〉



〈수입허가 필요시〉



자료: KOTRA/OIS 브라질 통관(2014)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는 자동차 등 자동수입허가 발급 대상이던 18개 품목에 대해 수입 사전 심사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추가로 발표된 수입 사전 허가제 대상 품목은 철강제품, 코팅지, 유리, 화학산업용

48) art. 26 da Portaria Secex no 23/11

원자재 등입

- 우리나라는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아크로니트릴 고무, 철강제품(평판압연제품) 등과 같은 제품에 사전심사제가 적용됨

〈표 Ⅲ-1〉 국가별 사전심사제 적용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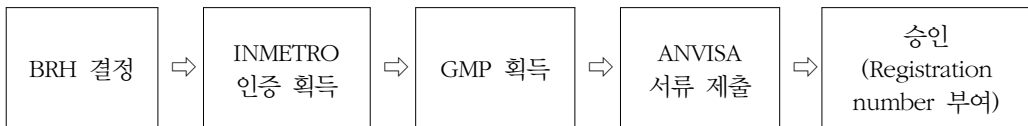
적용 국가	HS Code	품목
칠레	2501.00.19	굵은 소금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4806.40.00	그라신지와 기타 투명광택지 또는 반투명 광택지
한국	4002.19.19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중국, 멕시코	7005.29.00	플로트 유리, 표면을 연마한 유리
미국	2905.13.00	부탄올
중국	9617.00.10	보온병
아르헨티나, 미국	2929.10.21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북한, 한국, 스페인, 멕시코, 루마니아, 러시아, 대만, 터키	7208.51.00, 7208.52.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후판)
아르헨티나, 한국, 미국, 프랑스, 인도, 폴란드	4002.59.00	아크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루마니아	7304.19.00	탄소강 관
아르헨티나	2835.26.00	기타 인산칼륨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터키	3920.62.19, 3920.62.91, 3920.62.99	플라스틱 제 필름
미국,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독일	4810.22.90	경량의 도포지
중국	7304.19.00	무계목(seamless) 탄소강 관
중국, 인도	7323.93.00	스텐리스강 용기
중국	2918.14.00 2918.15.00	시트르산
호주, 중국, 한국, 인도, 멕시코	7210.30.10 7210.49.10 7210.61.00 7210.70.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자료: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 Licença de Importação

### 3) 의료기기 수입관리제도

- ANVISA(Age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는 브라질 보건부(Ministério da Saúde) 산하 관리 감독 행정 기관으로 브라질 국민의 위생, 건강과 관련되는 모든 제품 및 업체의 인허가, 관리 감독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임
  - 1999년 1월 26일 법령 9,782호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임
- ANVISA의 관리 대상은 의약품, 의료제품(기계장비포함), 식품, 화장품, 세제, 담배, 혈액 및 혈액제품 등이며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현지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법인 및 병원의 인허가 등임
- ANVISA는 항구, 공항, 국경지대 등에서도 제품 수입/수출 시 위생, 검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그림 III-4] ANVISA 획득 절차



자료: <http://www.emergogroup.com/resources/regulations-brazil> 인용

- BRH(Brazil Registration Holder)는 브라질에 의료기기를 등록할 수 있는 수입업자를 의미하며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필수조건임
  - 브라질은 브라질에 회사가 존재해야만 제품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BRH가 우리나라 업체를 대행하여 서류를 제출함
    - 즉, ANVISA 허가는 브라질 현지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야 허가 취득이 가능함
  - 의료상품이 전자제품일 경우 INMETRO(전자의료기 심사표준서)인증을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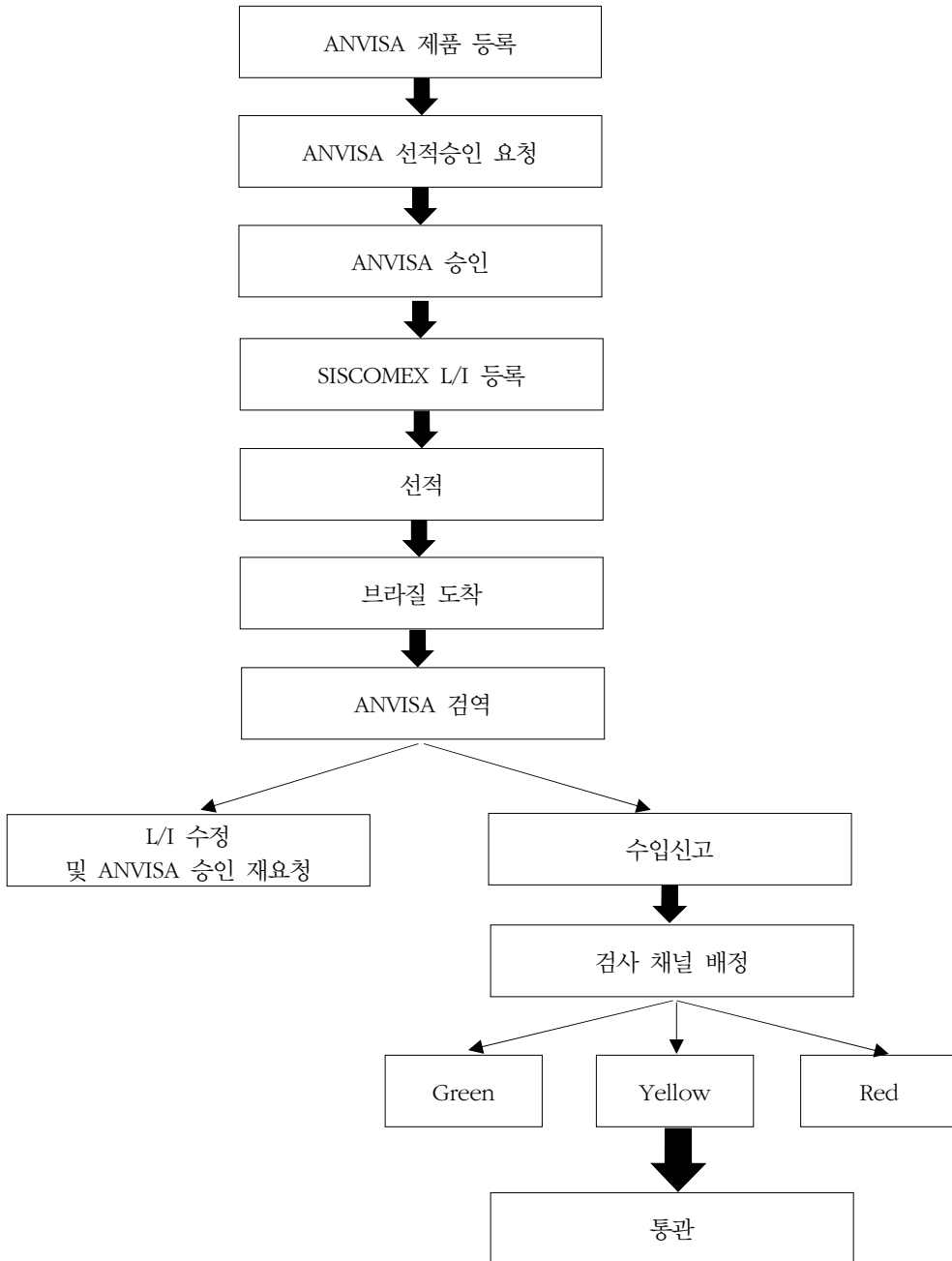
- ANVISA 해당 품목 구분은 제품의 위험정도에 따라 1군, 2군, 3군, 3-a군 등 4가지로 분류되며 법인 등급에 따라 제품 신청 비용이 다름<sup>49)</sup>
  - 1군(Classe 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낮은 제품으로 ANVISA 약식 등록만 필요
  - 2군(Classe I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보통인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3군(Classe III): 사용자 또는 공공위생에 위험 제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3-a군(Classe III a): 자가 테스트(Auto Test)가 필요한 품목으로 ANVISA 정식 등록 필요
  - GMP 심사비용은 1회 약 28,000달러이며 ANVISA에 납부함
  
- GMP<sup>50)</sup> 심사는 2년 주기로 계속 진행해야 하며 유효기간은 5년임
  
- 의료제품 등록절차는 MERCOSUR 국가 공통이며 제조업자는 반드시 공장실사(GMP)에 부합하는지 증명해야 함
  
- ANVISA 허가를 위해서 요구되는 심사사항은 독성물질 포함 여부, 인화성 물질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해 총 12가지 지표임
  - 독성물질 포함 여부
  - 인화성 물질 포함 여부
  - 생태계와의 조화 여부
  - 오염 여부가 의심되는 쓰레기(폐기물)의 경우
  - 세균감염 여부
  - 인체공학적 안정성 결여 여부
  - 환경과의 조화 여부

49) KoDent 해외인증-브라질 발췌(<http://www.kodent.co.kr/overseas/sub05.html>)

50) Good Manufacturing Practices로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의미함

- 기계의 경우 정비 상태 및 노후 여부
  - 규격의 불량 여부
  - 에너지 전파 상태 및 파장의 종류
  - 불필요한 물질, 에너지, 파장에 대한 보호 장치 여부
  - 제품 사용설명서 판독이 용이한지 여부
- 구비 서류는 업체규모 증명, 의료기기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작성한 등록 신청서 등을 포함해 총 12가지임
- 업체규모 증명
  - 의료기기 제조사(또는 수입사)가 작성한 등록 신청서
  - ANVISA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원본
  - 라벨 샘플
  - 사용방법 샘플
  - 기술적 특징
  - 해외영업 허가(등록)증
  - 원본 및 공증번역본
  - 제조사(수출업체)의 대 브라질 수출허가 원본(공증번역 첨가)
  -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발행한 브라질 영업허가
  - 의료기대상 기술 규정
  - 준수(강제인증취득) 증명
  - ANVISA 등록이 허가하는 기간내 영업증명(기한 연장 시)
  - 유사 제품 그룹 리스트

[그림 Ⅲ-6] 의약품의 사전수입 승인 후 수입절차



- ANVISA 취득 관련 법규는 건강 및 유기농 관련법, 건강 제품 위생 감시법 등이 있음
  - Lei 8080/90 - 건강 및 유기농 관련법
  - Lei 6360/76 - 건강 제품 위생 감시법
  - Lei 9782/99 - ANVISA 설립 관련법
  - Lei 6437/77- 위생법규 위반 관련법
  - Portaria 08/96- 진단용 제품(시험관용) 등록법
  - RDC 185/01- 의료제품 등록법
  - RDC 56/01- 보안 및 효능 관련 필수 요구사항
  - RDC 59/00- 생산과정 공정성 여부에 따라 인증 발급
  
- ANVISA 획득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됨
  
- ANVISA 제품 인허가는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불합격도 공고가 진행됨
  - 인허가 취득시, 사전 수입인허가(LI)를 취득 후 수입해야 하며 제품 인허가 불합격 시, 공고 후 30일 이내에 항소해야 함

#### 4) 강제인증 취득 의무제도<sup>51)</sup>

- 브라질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품목이 있으며 이를 강제인증 취득 의무제도라고 함
  
- 대표적인 강제인증 중 국립계량품질기술원(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Normalizacao e Qualidade Industrial, 이하 INMETRO) 인증이 있음
  
- INMETRO 인증 의무화 정책은 Petrobras(국영석유개발업체) 주도로 ABIMAQ(기계장비협회), ABTN(브라질 기술표준협회) 등의 유관기관과 함께 2010년부터 마련된 것임

---

51) <https://www.inmetro.gov.br/> 참조

- INMETRO 강제인증에 해당되는 제품군은 자동차용 제품, 산업용 제품, 가전 제품, 전자 제품, 유아용 제품, 안전 제품, 주방용품 등임
  - 유아용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장난감, 학교용품, 카시트, 젓병, 자전거 등이며, 안전 제품에는 소화기, 안전모, 개인안전장비, 안전장갑 등임
  - 산업용 제품의 경우 산업용 철근, 파이프, 로프 등이 2012년부터 INMETRO 강제인증 대상임
  - 자동차용 제품의 경우 2013년 7월부터 생산되는 자동차부품의 경우 INMETRO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2014년 7월부터 인증 마크가 없는 경우 소매업체의 일반 판매가 금지됨
  - 전자제품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터 브라질 내수 시장에 판매되는 특정 전자 제품은 INMETRO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함<sup>52)</sup>
    - Water cooler(Water fountain), Gas cooking, Shower (electrical), Refrigerators and Freezers, Air Conditioner (window & split), Washing machine, Ceiling / Hoof fan, Table fan, Electrical Oven and cookin, Micro-ove, Drying machine (clothes), Dishing machines, Commercial refrigerators, Electrical boiler and pumps for hydro-massage 등의 제품이 해당됨
  
- INMETRO 인증은 최초 심사(Initial Certification Process) 후 인증서가 발행(Product Compliance Certificate issuing with Conformity Mark)되면 사후 심사(Surveillance Process)를 통해 인증이 유지되는 과정으로 완료됨
  - 최초 심사는 제품기술설명서분석(Analysis of the Technical Documentation of the Product), 수입업자 공장감사계획서(Factory Audit Planning), 최초공장감사서(Initial Factory Audit), 샘플링검사(Sampling), 실험실평가(Laboratory Evaluation), 실험보고서분석(Test Report Analysis), 기술보고서발급(Technical Report Issuing), 인증절차검토(Certification Process Review) 등의 심사임
  - 인증서 발행 후 사후 심사 단계에서는 사후 심사 계획(Surveillance Audits Planning), 6/9/12개월마다 사후 심사(Surveillance Audits at each 6/9/12 months), 현지샘플

52) Decree 371

링작업(Sampling in Brazil), 실험실평가(Laboratory Evaluation), 검사보고서분석 (Test Report Analysis), 인증절차검토(Certification Process Review)등의 절차를 거침

## 다.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 브라질로 수입되는 제품에는 기본적으로 수입관세(II)<sup>53)</sup>, 공업제품세(IPI)<sup>54)</sup>, 유통세(ICMS)<sup>55)</sup>, 사회보장세(FIS/Cofins)<sup>56)</sup>가 누진 적용됨
  - 관세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됨
  - 공업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세는 부가가치세 원칙을 따름
- 행정단위에 따라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사회보장세는 연방세로 분류되어 연방법에 따라 과세되며, 유통세는 주(州)세로 주마다 세율이 달리 책정됨

### 1) 수입관세(Imposto de Importacao, II)

#### 가) 관세 제도

- 브라질은 MERCOSUR 회원국으로 수입관세는 대외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n, 이하 TEC)가 적용되며 관세율 범위는 0~35%임<sup>57)</sup>
  - 대외공동관세는 역내국 간에는 관세를 철폐하여 관세동맹을 맺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공동으로 합의된 관세를 부과하는 형태임
  - 2014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22.77%로 과거(1990년 32%)에 비해 약

53) Imposto de Importacao: II

54) Imposto sobre Produto Industrializado: IPI

55) 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 ICMS

56) Programa de Integração Social: PIS - Importação / Contribuição Social para o Financiamento da SeSocial: Cofins - Importação

57) 헌법 제153조 제I항, 조세법 제19조~제22조, 법률 제37호 (II법)

10% 낮아짐<sup>58)</sup>

- WTO의 국가별 관세율체계에 따르면, 브라질의 평균양허관세율은 31.4%이며 평균실행 관세율은 13.5%임
  - 농산물의 평균양허관세율은 35.4%, 평균실행관세율은 10.1%이며 비농산물의 평균 양허관세율은 30.8%, 평균실행관세율은 14.1%임

〈표 Ⅲ-2〉 2012년 브라질 관세율체계

(단위: %)

구분	전체	농산물	비농산물	1995년 WTO가입
단순평균양허관세율	31.4	35.4	30.8	농산물할당관세(%): 0.2
단순평균실행관세율	13.5	10.1	14.1	농산물특별긴급관세(%): 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4

- 수입되는 농산물의 약 71.5%가 10% 이하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수입되는 농산물의 7.8%는 면세, 6.5%는 0~5%, 57.2%는 5~10%의 관세율이 적용됨
- 비농산물의 경우 전체 수입품목의 약 53.2%에 10~25%의 관세율이 적용됨
  - 수입되는 비농산물의 5.6%는 면세, 14.3%는 0~5%, 53.2%는 10~25%의 관세율이 적용됨

58) <http://www.dutycalculator.com/country-guides/Import-duty-taxes-when-importing-into-Brazil/>  
참조

〈표 Ⅲ-3〉 2012년 수입가격 기준 농산물·비농산물의 관세 분포

(단위: %)

분포	면세	0≤5	5≤10	10≤15	15≤25	25≤50	50≤100	> 100
	관세품목 및 수입가격(비율%)							
농산물								
양허관세	2.7	0.0	0.4	1.1	7.1	74.9	13.7	0
실행관세	7.8	6.5	57.2	13.8	13.3	1.3	0.1	0
비농산물								
양허관세	0.7	0.1	0.6	2.1	23.7	72.7	0	0
실행관세	5.6	14.3	12.8	27.5	25.7	14.0	0	0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4

- 브라질로 수입되는 면류(cotton)의 경우 평균양허세율이 55%로 관세 상한선과 일치하며, 의류(Clothing) 또한 평균양허세율이 35%로 관세 상한선과 일치함
  - 유제품, 커피·차, 당류와 설탕과자, 음료 및 담배, 면류, 석유, 직물, 의류, 가죽제품·신발류, 이송장비는 면세에서 제외되는 품목임
  
-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평균 8~9%)나 반가공품(평균 11.9%)은 완성품(평균 15.8%)보다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대외공동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제도인 Ex-tarifário(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가 존재하는데 적용대상은 브라질 산업 발전을 위해 수입되는 기계설비품목 등 자본재임
  - 통상개발산업부(MDIC), 생산발전국(SDP)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제도로 기업의 생산경쟁력 제고가 목적임
  
- 대외무역위원회(Camex)<sup>59)</sup>는 산업용 기계·장비에 대해 수입관세를 기존 4~18%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정함
  -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구매 자본재 95개 품목이 특별감면 대상이며, 해당 조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59)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 산하

- 수입산 자본재는 국내에 유사품이 없어야 하며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본재 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 해당 품목 목록은 대외무역위원회 홈페이지의 Resolução Camex No.23에서 확인 가능함

〈표 Ⅲ-4〉 브라질 수입 품목별 관세율

(단위: %)

품목	WTO 양허세율			실행세율		
	평균	면세비율	상한	평균	면세비율	상한
동물성 생산품	37.8	5.4	55	8.2	9.6	16
유제품	48.8	0	55	18.3	0	28
과일, 채소, 식물	34.1	1.0	55	10.1	5.6	55
커피, 차	34.1	0	35	13.3	0	20
곡물 및 곡물조제품	42.9	0.8	55	10.6	14.7	20
종유, 지방 및 유지	34.6	0.4	35	7.9	10.8	30
당류와 설탕과자	34.4	0	35	16.5	0	20
음료 및 담배	37.7	0	55	17.0	1.7	27
면	55.0	0	55	6.9	0	10
기타 농산물	28.8	7.9	55	7.8	8.9	20
어류 및 어류제품	33.6	3.8	35	10.3	4.6	32
광물 및 금속	32.9	0.6	35	10.0	7.2	35
석유	35.0	0	35	0.1	97.2	6
화학제품	21.1	0.4	35	8.2	1.7	28
목재, 지류 등	28.4	2.6	35	10.6	3.6	18
직물	34.8	0	35	23.3	0	35
의류	35.0	0	35	35.0	0	35
가죽제품, 신발류 등	34.6	0	35	16.0	0.8	35
기계류	32.4	0.4	35	12.8	12.3	35
전자기기	31.9	2.6	35	14.1	12.6	25
이송장비	33.1	0	35	18.6	10.7	35
기타 제품	33.0	0.8	35	15.1	9.9	35

자료: 세계무역기구(WTO) 통계자료 2014

## 나) 품목분류 및 관세율 조회처

-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으로 1995년부터 회원국이 공통으로 NCM(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 품목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1995년 1월 1일부터 역내국 사이의 무역거래에 대하여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남미 공동시장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역거래에 대하여는 협정으로 만들어진 공통 대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를 부과함
- HS 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은 총 8자리(0000.00.00)로 구성되며 앞 여섯 자리(0000.00)는 국제공통, 뒤 두 자리는 브라질 고유번호임
  - 뒤 두 자리(00)는 제품의 사양에 따라 다양함
- 품목분류에 대해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대외무역국(SECEX)에 질의하거나, 재무부 산하 국세국(SRF/COSIT)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SECEX에 질의하는 편이 빠를 수 있으나 SECEX의 회신은 세관당국과 COSIT를 구속하는 것은 아님
  - 사전심사는 브라질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샘플과 규격 등 상세내역에 관한 사항이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사전심사 결정은 몇 달 소요될 수도 있음
- 수입품별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유통세, 사회보장세는 연방조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 [www.receita.fazenda.gov.br](http://www.receita.fazenda.gov.br) 접속 → 상단 좌측 SERVICOS(서비스)에서 Empresa (법인) 클릭 → Aduana e Comércio Exterior 클릭 → Importação에서 Simulador Tratamento Trib. e Administrativo das Importações 클릭 → NCM 코드, 물품가격, 화폐단위 선택, 식별코드 입력 → 부과세금 산정
- 우리나라업체가 브라질에 NCM 코드 7208.52.00(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을

수출한다면 수입관세는 물품가(CIF 1,000달러 가정)의 12%, 공업세 5%, 사회보장세 각 1.65%, 7.6%가 부과되어 세금은 총 602.14달러를 납부해야 함

○ 단 유통세는 주(州)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계산해서 더해야 함

□ 우리나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도 각국 관세율 조회가 가능함<sup>60)</sup>

○ 우리나라 관세청은 해외통관지원센터를 통해 무역거래에 필요한 각국의 품목별 관세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2) 공업제품세(Imposto sobre Produto Industrializado, IPI)

□ 연방세이며, 대부분의 국내 생산품과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적용됨

○ 국내 생산품의 경우 제조업체의 판매 시, 수입품의 경우 통관 시에 적용됨

○ 일반적으로 수입관세가 높은 품목은 공업제품세도 높은 경향이 있음

□ 공업제품세의 범위는 0~330%까지 다양하나, 평균적으로 0~20%임<sup>61)</sup>

○ 공업제품세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

○ 담배나 향수 등 국민생활 필수품이 아닌 경우는 과세율이 높고 생필품은 과세율이 낮음

○ 예를 들어 운송수단은 35%, 주류는 60%, 담배는 330%가 적용됨

□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공업제품세 금액 공제 가능함

○ 수입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업제품세 금액만큼을 면제받게 되어, 결론적으로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아님

60) 관세율조회처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overseas/BoardList.do?bbsTypeCd=OVERSEASBBS03&layoutMenuNo=20604>

61) 조세법 제46조~제51조, 법률 제7,212호(IPI규제법), 법률 제6,006호(IPI세율관련법)

[그림 Ⅲ-6]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조회처 (상: NCM 입력, 하: 세금 산정)

**Simulador do Tratamento Tributário e Administrativo das Importações**

Informe os dados abaixo:

Código NCM: 72085200 (Pesquisar código NCM)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업연제품(후판) NCM 코드

Valor Aduaneiro: 1.000,00

Moeda: Dólar US

código de verificação: MOCY M CCY

Consultar Limpar

---

**Simulador do Tratamento Tributário e Administrativo das Importações**

Simulação do Tratamento Tributário e Administrativo das Importações		CIDE, Antidumping e Medidas Compensatórias	
<b>Código NCM</b>	7208.52.00		
<b>Descrição NCM</b>	LAM.PL.FER/AÇO,ESP >=4,75,<10MM,QUENTE N ENR.	Há incidência de Antidumping. Não há incidência de Cide. Não há incidência de Medidas Compensatórias.	
<b>Taxa de Câmbio do Dia 25/4/2014</b>	RS 2,2426		
<b>Valor Aduaneiro Convertido</b>	RS2.242,60		
<b>Aliquota II (%)</b>	12,00	<b>Tributo II</b>	RS 269,11
<b>Aliquota IPI (%)</b>	5,00	<b>Tributo IPI</b>	RS 125,59
<b>Aliquota PIS (%)</b>	1,65	<b>Tributo PIS</b>	RS 37,00
<b>Aliquota COFINS (%)</b>	7,60	<b>Tributo COFINS</b>	RS 170,44
<b>As alíquotas podem ser preenchidas manualmente e os tributos recalculados</b>			
세목	세율	세액	

Efetuar Nova Consulta

□ 공업제품세는 행정부령 발표 시 즉각 시행이 가능해, 정책이 빠르고 효과가 직접적이라는 면에서 연방정부의 조세정책에 자주 사용됨

○ 다른 조세와 달리 연방정부가 행정부령<sup>62)</sup>을 통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  
의 개입 여지가 없으며, 행정부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가능함

□ 2011년 12월부터 아래 주류에 대한 공업세가 60%에서 80%로 인상됨<sup>63)</sup>

○ 「Decreto n.º 7.660법」에 근거함

〈표 Ⅲ-5〉 공업세 인상 품목(NCM 코드)

NCM 코드	품목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Vinhos de uvas frescas, incluídos os vinhos enriquecidos com álcool; mostos de uvas, excluídos os da posição 20,09)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Vermutes e outros vinhos de uvas frescas aromatizados por plantas ou substâncias aromatizadas)
2206,00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꿀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비알코올성 음료와의 혼합물 (Outras bebidas fermentadas (sidra, perada, hidromel, por exemplo); misturas de bebidas fermentadas e misturas de bebidas fermentadas com bebidas não alcoólicas, não especificadas nem compreendidas em outras posições)
2208,20,00	코냑, 아르마냑, 그라파와 그 밖에 포도 또는 포도씨꺼기로 제조한 브랜디 (Conhaque, bagaceira ou graspa e outras aguardentes de vinho ou de bagaço de uvas)
2208,30	위스키(Uísques)
2208,40,00	가싸싸(사탕수수술)와 카니냐(사탕수수술) (럼과 과일주) (Cachaça e caninha (rum e tafiá))
2208,50,00	진 또는 제네바(Gim e genebra)
2208,60,00	보드카(Vodca)
2208,70,00	증류주·리큐르(Licores)
2208,90,00	겉죽하게 만든 복합브랜디 (Aguardente composta de alcatrão)

62) Decreto Executivo; Executive Decree

63) <http://www.receita.fazenda.gov.br/Legislacao/Ins/2013/in14322013.htm>

〈표 Ⅲ-5〉의 계속

NCM 코드	품목
2208.90.00	복합브랜디와 생강주(Aguardente composta e bebida alcoólica, de gengibre)
2208.90.00	쥬니퍼베리알콜음료(Bebida alcoólica de jurubeba)
2208.90.00	과일에센스오일알콜음료 (Bebida alcoólica de óleos essenciais de frutas)
2208.90.00	과실에서추출한 단순브랜디 (Aguardentes simples de plantas ou de frutas)
2208.90.00	타르 또는 생감을 제외한 복합브랜디 (Aguardentes compostas, exceto de alcatrão ou de gengibre)
2208.90.00	아티초크 또는 사과로 만든 식전술 (Aperitivos e amargos, de alcachofra ou de maçã)
2208.90.00	바피다스-일종의 럼주(Batidas)
2208.90.00	아티초크와 사과로 만든 것을 제외한 식전술 (Aperitivos e amargos, exceto de alcachofra ou maçã)
2208.90.00	알콜농도 8% 이하의 주류를 제외한 기타 (Outros, exceto álcool etílico e bebida refrescante com teor alcóolico inferior a 8%)

자료: 연방조세청 법률정보 개정 AnexoI

### 3) 유통세(Imposto sobre Circulação de Mercadorias e Serviços, ICMS)

- 유통세는 수입품에 적용하는 주(州) 부가가치세로 주정부의 가장 큰 세수원임
  - 1965년 제정되어 연방의 각 주와 브라질리아 연방 특구가 징세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과세표준은 서비스 가격 또는 판매가격이며 각 주의 최대 수입원임
  
- 유통세는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 19%, 상파울루(Sao Paulo) · 미나스제라이스(Minas Gerais) · 파라나(Parana) 18%, 그 외 주는 17%로 주(州)에 따라 차등 부과됨<sup>64)</sup>
  - 공업제품세와 같이 수입품이 통관될 때 과세되며,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

64) 헌법 제155조 제II항, 법률 제87호(ICMS법), 주법

매할 때 공제할 수 있음

- 상파울루 주의 경우 통상 18%가 부과되지만, 품목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음
  - 일부 기업들은 유통세가 낮은 주로 생산 및 판매 거점을 옮기거나 유통세가 낮은 주로부터 제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음
- 상품의 유통, 서비스 제공, 주간(州間) 운송 시에 부과되며 수입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4) 사회보장세(Programa de Integração Social, Importação/ Contribuição Social para o Financiamento da Seguridade Social)

- 사회보장세는 연방보완법<sup>65)</sup>에 의해 사회통합기여세(PIS)와 사회복지기여금(COFINS)으로 나뉘며, 모든 법인에 대해 부과되고 과세표준은 매월 총소득임<sup>66)</sup>
  - PIS/COFINS는 2004년에 시행되었고, SIMPLES의 적용을 받는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혜택을 줌<sup>67)</sup>
  - PIS는 1.65%로 일괄 적용되고 있고, COFINS 기준세율은 7.6%임

#### 5) 그 외 비용

- SISCOMEX 이용료는 수입 건당 200~300헤알로 세관시스템 사용비용이며 수입신고 조건 및 세번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컨테이너 하역 용역세(Terminal Handling Charge)의 경우 건당 700~800헤알로 선사에서 청구하는 비용이므로 선사별로 다를 수 있음

65) Lei Complementar 07/1970

66) 헌법 제195조 제I항 B, 법률 제10,833호 (COFINS관련법)

67) SIMPLES는 법률 제9,317호(Lei 9,317/96)로 제정된 영세기업을 위한 조세통합법임

- 항만세(AFRMM)는 해상운임의 25%로 항만청 비용으로 간주되며 부두 내 창고료는 10일 기준으로 CIF 가격의 0.65%임

〈표 Ⅲ-6〉 브라질 수입 시 과세되는 최종가격 도출 예/우리나라 비교

CIF 가격	100	달러
수입관세(I,I)	14	%
공업세(IPI)	15	%
유통세(ICMS)	18	%
사회보장세(PIS/Cofins)	9.25	%
<b>적용 시</b>		
CIF 가격	100.00	달러
수입관세(I,I)	14.00	%
수입관세 산정가격	14.00	달러
공업세 산정기준(CIF+I,I)	114.00	달러
공업제품세(IPI)	15.00	%
공업제품세 산정가격	17.10	달러
유통세 산정기준(CIF+I,I+IPI)	131.10	달러
새로운 유통세 산정기준 $[(CIF+I,I+IPI)*100]/(100-ICMS)$	159.88	달러
유통세(ICMS)	18.00	%
유통세 산정가격	28.78	달러
사회보장세 산정기준(CIF+I,I+IPI+ICMS)	188.66	달러
사회보장세(PIS/Cofins)	9.25	%
사회보장세 산정가격(수입자 부담)	17.45	달러
<b>최종가격</b>	<b>177.33</b>	<b>달러</b>

자료: KOTRA KBC 상파울루

## 라. 관세특혜제도

### 1) 환급/감면

- 브라질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내국세를 면세해 줌
- 수입관세, 공업제품세, 주 유통세, 사회보장세 모두 해당됨
  - 주정부 관세특혜제도(FUMDAP)를 통해 환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환급은 브라질 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일종의 조세 인센티브임
- 수입 후 국내에서 가공 과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할 예정인 제품의 경우, 수입 과정에서 일시적 관세 정지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이미 수출된 제품의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
- 브라질 대외무역국(SECEX)은 국내시장 유통이 아니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한해, Drawback(2006년 11월 24일 발표된 SECEX 법령 35) 시스템에 근거하여 관세를 감면해 주거나 환급해 주는 혜택을 부여함
- 브라질의 관세 환급(Drawback)은 일시적 유예(Suspensão), 면세(Isenção), 환급(Restituição)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됨
  - 관세 감면을 위해 수출입내역 증빙서류를 SECEX에 제출해야 함
  - 관세 환급의 경우 연방조세청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 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sup>68)</sup>
- 브라질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 제품으로 수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유통세(ICMS)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sup>69)</sup>
- 해외 에이전트에게 지급하는 수출커미션에 대해서 원천과세 면제함
  - 단, 조세피난처<sup>70)</sup>에 대해서는 25%의 원천과세를 징수함

68) 원칙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나 신청과정이 복잡하고 처리시간이 길어 신청건수 대비 환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음

69) 수혜여부 및 감면 비율은 대외무역공동관세 TEC에서 열람할 수 있음

70) 브라질 세법에서는 총소득세율이 20% 이하인 경우 조세피난처로 간주

## 2) 보세창고(EADI)

- 세금 미납상태에서 보세창고에 물품 장치 및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가능함
  - 물품이 도착하면 보세창고로 입고되는데, 이때 세금 미납상태에서도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 가능하며,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가능함
  - 해상운은 도착 전 48시간, 항공운은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보세운송 신고 시 현도 배정함<sup>71)</sup>

## 마. 주요 항구

- 브라질에는 총 36개의 항구가 있으며 그 중 10개의 주요 항구에서 대부분의 무역이 이뤄짐
  - 주요 항구들의 특징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특히 비토리아(ES), 마나우스(AM), 플로리아노폴리스(SC) 등의 주는 수입에 대해 세제 또는 용자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브라질 항만 인프라의 경쟁력은 최하위권에 속함
  - 세계경제포럼 2010~2011 평가에서 세계 139개국 중 123위에 그침
- 과거 브라질의 항구 시스템은 1990년까지 연방 정부 소유의 항구관련 국영 기업 (Portobras-Empresa Brasileira de Portos S.A.)이 관장했으나, 현재는 민영화를 통해 항구 현대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음
  -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투자가 미약하며 잦은 세관 파업과 부족한 인프라로 고비용 구조는 지속되고 있음
- 만성적인 인프라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브라질 정부의 항만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

71) 보세화물을 공항분류장에서 보관료 없이 바로 운송이 가능한 상태로 배정하는 것으로 T배정이라고도 불림

- 는 등 향후 처리가능한 물동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항만은 다른 국가에 비해 물동량 처리가 느리며 이에 대한 수입업체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2017년까지 270억달러를 투입하여 항만 현대화 사업을 민관 협력하에 추진하기로 함
- 브라질의 대표적인 항구인 산토스(Santos)항은 커피로 유명하며 물동량 기준 브라질을 포함해 남미 최대의 항구임
- 산토스항을 통한 교역 품목은 각종 농산물, 커피, 자동차, 비료, 금속, 육류, 섬유 등 다양함
  - 그 외 브라질 제2항구인 파라나과(Paranaguá)항, 세계 3대 미항이자 시설 및 규모 면에서 브라질 최대 항구 중 하나인 리우데자네이루(Rio de Janeiro)항 등이 있음

〈표 Ⅲ-7〉 브라질 항구 및 소속주

항구명	소속주	위도	경도
Angra dos Reis	RJ	23° 01' S	44° 19' W
Antonina	PR	25° 30, 1' S	48° 31' W
Aracaju	SE	-	-
Aratu	BA	12° 45' 30" S	38° 30' 10" W
AreiaBranca	RN	04° 49' 06" S	37° 02' 43" W
Barra do Riacho	ES	19° 49' 24" S	40° 04' 20" W
Belém	PA	01° 27' S	48° 30' W
Cabedelo	PB	06° 58' 21" S	34° 50' 18" W
Cubatão	SP	-	-
Forno	RJ	22° 58' 18" S	42° 54' W
Fortaleza	CE	03° 41' 15" S	38° 29' W
Ilhéus	BA	14° 47' S	39° 02' W
Imbituba	SC	28° 17' S	48° 40' W
Itajaí	SC	26° 54' S	48° 39' W
Itaqui/Madeira	MA	02° 34' S	44° 21' W
Macapá	AP	0° 04' N	51° 04' W
Maceió	AL	09° 40' S	35° 44' W
Madre de Deus	BA	-	-
Manaus	AM	03° 09' S	60° 01' W

〈표 III-7〉의 계속

항구명	소속주	위도	경도
Natal	RN	05° 47' S	35° 11' W
Niterói	RJ	22° 52' 30" S	42° 08' 30" W
Paranaguá	PR	25° 30' S	48° 31' W
Pecém	CE	03° 25' S	38° 35' W
Pelotas	RS	31° 45' S	52° 25' W
Ponta do Félix	PR	-	-
Porto Alegre	RS	30° 02' S	51° 12' W
Recife	PE	08° 04' S	34° 52' W
Rio Grande	RS	32° 10' S	52° 05' W
Rio Janeiro	RJ	22° 55' S	43° 12' W
Salvador	BA	12° 58' S	38° 30' W
Santarém	PA	02° 25' S	54° 43' W
Santos	SP	23° 56' S	46° 20' W
São Luiz	MA	-	-
São Francisco do Sul	SC	26° 14' S	48° 42' W
São Sebastião	SP	23° 47' 30" S	45° 23' W
Sepetiba	RJ	22° 52' S	43° 52' W
Suape	PE	08° 24' S	34° 57' W
Vila do Conde	PA	01° 32' 42" S	48° 45' W
Vitória/Tubarão	ES	20° 18' S	40° 20' W

자료: 브라질 항만청

- 해상 운송의 경우 Santos, Itajai, Vitoria, Manaus 등이 부산항과 연결되어 있음
  - 부산항에서 Santos항, Itajai항, Vitoria항, Manaus항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35일 정도임
  
- 항공 서비스는 상파울로 주 Viracopos공항과 Manaus 주에 위치한 Manaus공항이 있음
  - 인천국제공항에서 Viracopos공항이나 Manaus공항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3~7일 정도임
  
- Santos, Vitoria, Itajai 등과 같은 항구에서 São Paulo, Campinas, Piracicaba, Belo Horizonte 등 주요 도시까지의 화물 운반을 위해서는 육상 운송을 이용함

〈표 Ⅲ-8〉 브라질 해운 운임표

한국 선적항	브라질 도착항	운임 USD(20'/40'/40'HQ)	Transit Time
부산	Santos	1600/2200/2500	Approx. 34~35days
	Itajai	1600/2200/2500	Approx. 38days
	Vitoria	2900/4500/4500	Approx. 40~50days
	Manaus	3100/5400/5400	Approx. 46~58days

자료: HYC Logistics(2013년 6월 기준)

〈표 Ⅲ-9〉 브라질 항공 운임표

한국 선적 공항	브라질 도착 공항	운임 USD (500kg 선적기준)	Transit Time
인천	Viracopos(São Paulo)	약 USD 7/kg	Approx. 4~5days
	Manaus	약 USD 6/kg	Approx. 7days

자료: HYC Logistics(2013년 6월 기준)

〈표 Ⅲ-10〉 브라질 육상 운임표

항구	도시	거리(km)	운임(USD)
Santos	São Paulo	76	700
	Campinas	169	1,000
	Piracicaba	237	1,300
	Belo Horizonte	680	3,700
Vitoria	São Paulo	993	2,600
	Campinas	1,050	3,150
	Brasilia	13,750	5,058
Itajai	São Paulo	640	1,900
	Campinas	680	2,000
	Curitiba	216	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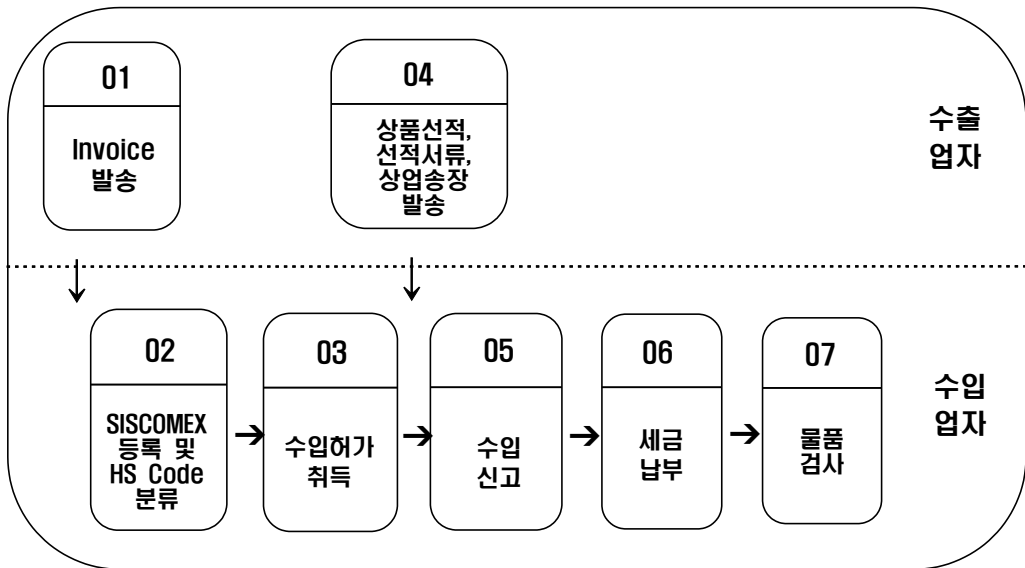
자료: HYC Logistics(2013년 6월 기준)

## 2. 브라질의 통관 절차

### 가. 수입통관 절차

- 브라질 수입통관 절차는 ① SISCOMEX 등록 및 HS Code(NCM) 분류 → ② 수입허가 취득 및 기타 행정처리 → ③ 수입신고 → ④ 세금 납부 → ⑤ 물품검사 → ⑥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통관은 통상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됨
  - 브라질은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선납 후 물품검사를 시행함
  - SISCOMEX는 대외무역국(SECEX)이 1997년 도입한 무역자동화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세금 납부, 세관 검사 등 통관 전 단계에서 사용되는 전산 시스템임

[그림 Ⅲ-7] 브라질의 수입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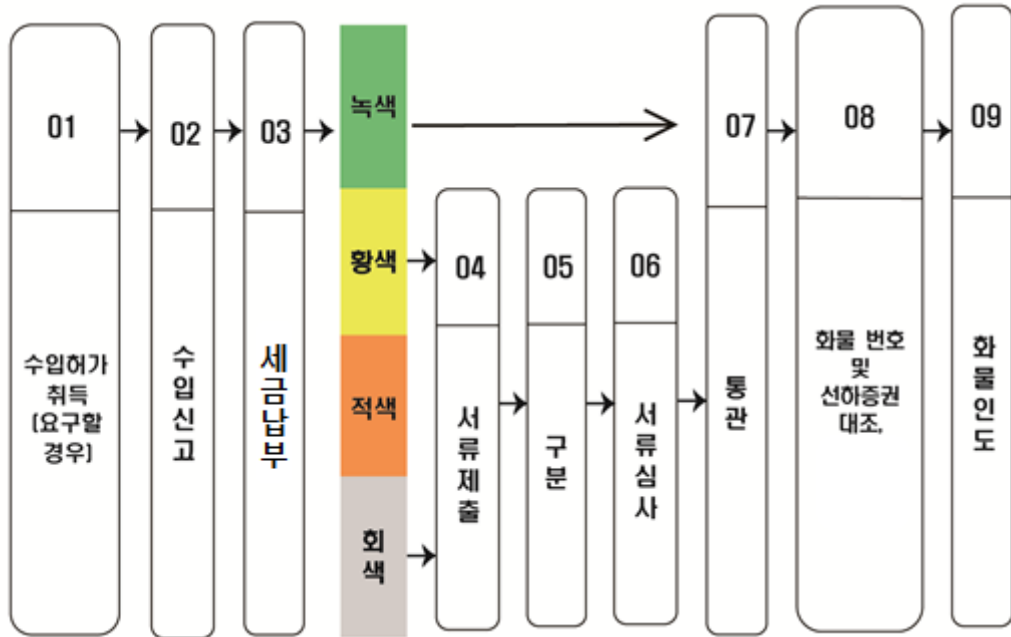
- 수입자는 화물도착 전까지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수입신고란, 세관에 수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 신고자란, 수입을 하기 위하여 그의 명의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이며 신고

시기는, 화물이 도착하기 전임

- 수입신고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수입허가증(L/I), 선하증권(B/L), 상업송장(C/I), 포장명세서(P/L)이며 의약품, 농수산물 등 화물의 성격에 따라 기타 서류 및 인허가를 요하기도 함
  - 정확한 원산지과 가격이 기재된 상업송장이 통상 5부 필요함
  - 서류는 영어 혹은 포르투갈어로 작성해야 함
  - 상업송장이 통관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등 서류미비로 인한 관세법 위반시 1~5% 내의 관세와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함
  
- 물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관세(II), 공업세(IPI), 주유통세(ICMS), 사회보장세(PIS/Cofins) 등임
  
-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 외에도 창고세, 터미널 사용세 등 각종 경비를 지불해야 함
  - 창고비(Storage fee)는 CIF 가격에 관세를 합산한 금액의 1%임
  - 항공화물처리비(Air Handling fee)는 1kg당 0.015헤알(BRL)임
  - 공항이용료(Airport fee)는 창고비와 항공화물 처리비 합산의 50%임
  - 신고비용(Declaration fee)은 선적당 30헤알(BRL)임
  
- 수입신고 후 수입건은 무작위 지정되어 화물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 총 4개 채널로 분류됨
  - 녹색(Verde): 자동 통관 채널로 수입물품이 가장 원활히 유통되는 최적의 채널임
  - 황색(Amarelo): 서류심사를 거치며 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며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를 검토함
  - 적색(Vermelho): 서류심사 및 화물검사를 통해 수입물품의 정보와 서류상의 정보가 일치해야 통과됨
  - 회색(Cinza): 서류·화물의 정밀검사 및 수입회사 조사를 통해 세밀한 검토가 진행됨

-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통관대기 건수, 현물 수량, 세관 인력 상황 등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결정됨
  - 최대 90일 통관 지연 시 압류 처리됨
  - 수입자가 연방 세무국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함

[그림 Ⅲ-8] 수입신고 후 물품검사 과정



자료: 브라질 현지진출업체 자료 인용(2014)

## 나. 수출통관 절차

### 1) SISCOMEX 업체 등록 단계

- 대외무역국(SECEX)의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통해 업체 및 수출정보를 등록함
  - 판매 등록(Sale Registration): 수출등록 전에 이뤄져야 하는 수출품의 기본적인 물

품거래 판매정보를 등록하는 단계임(Secex 법령 36/07번 참조)

- 신용등록(Credit Registration): 수출물품의 자금정보를 등록하는 단계로, 지불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을 때, 동일기간 혹은 더 짧은 기간에 이자가 발생했을 때 의무 등록
- 수출등록(Export Registration): 상업, 자금, 재정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는 단계로 반드시 수출신고 전에 이뤄져야 함. SISCOMEX상의 정보기재 표를 작성하면 대외무역국 및 관련부처의 심사에 따라 등록유효, 등록유효연기로 분류됨

## 2) 수출신고 단계

- SISCOMEX를 통해 수출신고 절차를 완료함
  - 수출신고 필요서류는 상업송장, 선하증권, 적하목록, 필요시 각종 허가·등록증 등 임

## 3) 물품검사·심사 단계 후 통관 완료

- 수출신고가 접수되면 물품은 3가지 채널로 분류되어 검사 및 심사의 단계를 거치게 됨
  - 녹색: 자동 수리됨
  - 황색: 관련서류 제출 후 수리됨
  - 적색: 관련서류 제출 및 물품검사 후 수리됨
- 모든 심사가 끝나면, 통관이 완료되며 물품을 선적하여 수출함

## IV. 통관 절차별 고려 사항<sup>72)</sup>

〈표 IV-1〉 브라질 통관 절차별 유의사항

단계	유의 사항
1. SISCOMEX 등록 및 NCM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SCOMEX에 수입자 등록을 해야만 수입허가 자동발급 가능여부, 수입신고, 비용납부 등의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의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ISCOMEX를 이용하기 위해 RADAR<sup>73)</sup>을 선취득 필요</li> </ul> </li> <li>○ NCM(브라질 상품분류) 코드 기재 시 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엔지니어와 통관사에 자문하여 분류하는 작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을 받으면 벌과금 및 통관 지연문제 발생</li> </ul> </li> </ul>
2. 수입신고 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L서류 작성 시 선적서류에 기재한 무게(Gross Weight)와 자중(Tare Weight)<sup>74)</sup>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에 유의</li> <li>○ 해상화물의 경우, 파트너 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항만청에 등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청 승인에 3~4주가 소요되므로 업무 진행 전 최소 2달 전부터 항만청 등록 작업을 준비해야 함</li> </ul> </li> <li>○ 연방조세청에서 발행하는 CNPJ<sup>75)</sup> 등록·신청 필수</li> <li>○ 선적조건이 다를지라도 서류에는 반드시 FOB, Freight를 별도 명기 유의</li> <li>○ 브라질 국제무역부(DECEX)의 특별 관리 제품 또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들은 선적 전 수입승인(LI) 취득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의 경우 ANVISA 인증 필요제품인지 반드시 확인</li> <li>- 사전수입 승인 대상 제품이 승인 없이 선적될 경우 송장 금액의 약 30%의 벌과금을 부과함에 주의</li> </ul> </li> <li>○ 수입허가 자동 발급 불가 품목은 반드시 선적 전 수입허가 승인 의무</li> <li>○ 세관별 상이한 업무 방식으로 인해 동일 제품에 대해 다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 발생</li> </ul>
3. 수입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신고 시 필요한 기본서류(C/I, P/L)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물품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li> <li>○ B/L상에 NCM code와 CNPJ 넘버 표기가 의무이며 미기재시 수입 불가</li> <li>○ 일부 서류에 대해서는 포르투갈어 서류만 허가하므로 유의</li> <li>○ 선적 서류 작성 시 제품의 기술 설명과 같은 item description 필요</li> <li>○ 브라질 선적 서류가 현물과 차이가 있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수정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되고 재심사까지 통관이 지연됨을 유의</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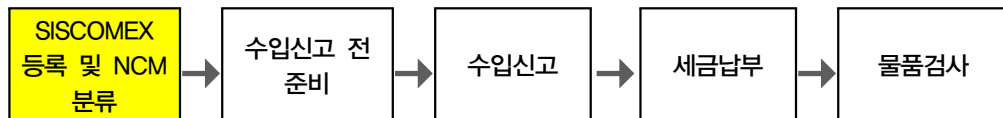
72) 관세청, KOTRA, (주)하나로 TNS 현지법인 인터뷰, 범한판토스 브라질물류 담당자 인터뷰 등

73) 수입면허(Registro e Rastreamento da Atuação dos Intervenientes Aduaneiros)

〈표 IV-1〉의 계속

단계	유의 사항
4. 세금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은 수입통관 시 물품 검사 전 세금납부를 완료해야 통관 가능</li> <li>○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구매 자본재 95개 품목이 특별감면 대상이며, 해당 조치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용 기계·장비 수입관세를 기존 4~18%에서 2%로 한시적으로 감소</li> </ul> </li> <li>○ 세관에 따라 동일 상품의 NCM 코드가 다른 경우가 있어 관세가 달리 책정됨에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동일 전자제품이 A세관에서는 관세 10%, B세관에서는 무세</li> </ul> </li> <li>○ 주정부별로 세금 혜택이 달라 도착항 확인이 중요하며, 수입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주정부는 비뜨리아(ES), 마나우스(AM), 플로리아노폴리스(SC) 등임</li> <li>○ 관세 환급은 현금이 아닌 Credit로 받는 형식이 대부분으로, 물품 판매 및 구매 시 공제받는 형태</li> </ul>
5. 물품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 검색 시 물품 포장별로 Packing List나 내용물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 전수 검사를 시행하므로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수검사 미시행시 Packing list 미제출로 간주해 벌금부과(건당 500헤알)</li> </ul> </li> <li>○ 통상 수입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특별한 세금탈루 및 세관 추징내역이 없을 경우 Green 채널을 배정받기 시작하며 무검사 통관 빈도가 높아짐에 유념</li> <li>○ Gray 채널은 마약, 총기, 밀수품 등의 강도 높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되는 특수한 경우임에 유의</li> <li>○ 저가신고(Under Invoicing)에 대한 단속강화로 물품가격 기입 시 주의 요망</li> <li>○ 법률 위반 의혹에 따른 통관지연(90일 이상)시 압류 처리</li> <li>○ 물품 검사가 완료되면 Nota Fiscal을 제출해야지만 물품 반출 가능</li> </ul>

### 1. SISCOMEX 등록 및 NCM 분류 단계



74) 적재하지 않은 상태의 컨테이너 중량

75) 브라질 국세청 등록 납세번호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SISCOMEX(Sistema Integrado de Comércio Exterior)<sup>76)</sup>는 브라질 전자 무역시스템으로 개발통상산업부<sup>77)</sup>가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수출입 신고 및 허가는 동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짐
- 브라질의 모든 수입업체는 대외무역국<sup>78)</sup>이 주관하는 SISCOMEX 시스템에 무역업 등록을 하는 것이 의무임
  -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무역업자로 등록이 되며 이후 수출입절차를 전산화할 수 있음
  - 서류작업을 통한 수입절차가 아닌, SISCOMEX에 수입업자 등록을 해야 통관업무 및 비용납부가 가능함<sup>79)</sup>
- SISCOMEX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RADAR(Registro e Rastreamento da Atuação dos Intervenientes Aduaneiros)을 선취득해야 함
  - RADAR은 무역업 신고 또는 수입면허를 의미함
  - 연방 세무국에 서류 제출 후 심사 과정을 거쳐 RADAR 취득이 가능함
- 등록양식에는 무역업체의 법적 대표자 정보, 대표활동(수출, 수입, 예금자/공탁자, 수송자), 시스템 접속유형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 관세코드인 NCM 코드는 HS Code에 해당됨<sup>80)</sup>
  - 총 8자리(0000.00.00)로 구성되어있고 앞 4자리(0000)는 국제공통, 뒤 4자리

76) [http://www.receita.fazenda.gov.br/manuaisweb/importacao/guia/versao\\_web/operacoes/licenciamento/solicitacao/licenca.htm](http://www.receita.fazenda.gov.br/manuaisweb/importacao/guia/versao_web/operacoes/licenciamento/solicitacao/licenca.htm) 참조

77) [www.desenvolvimento.gov.br](http://www.desenvolvimento.gov.br)

78) 대외무역국에 의해 원산지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음

79) Instrução Normativa RFB nº 1.288/12.

80) 범한판토스 브라질 물류담당자 인터뷰

(00.00)는 제품의 사양 등에 따라 다양함

- 브라질 세관은 수입세번 관련 데이터를 5년 이상 장기 보관 관리하며 세무감사 시 주요 검토대상이 되므로 수입초기에 NCM 코드를 정확히 분류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브라질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 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한 많은 세금을 내야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음
- 한국무역협회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sup>81)</sup>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sup>82)</sup>의 우측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중 ‘통상수입 규제’로 접속 가능함
- 현재 브라질이 반덤핑관세 등의 규제를 가하는 품목 확인을 위해서는 ‘KITA 통상·수입규제’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현황’ → ‘주요국 제소 및 규제 내역’ → ‘중남미’에서 브라질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필요 정보 지정 후 검색 기능을 통해 영문 품명과 정확한 HS 코드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 볼 수 있는데, 이는 ‘통상·수입규제’ 사이트 상단 메뉴 중 ‘각국 규제 동향’에서 확인 가능함
  - 단, 본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웹페이지 무료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열람 가능함

## 나. 업무상 유의점

- SISCOMEX 시스템을 설치해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스템 미설치 시 수입업무 자체의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함
  - 수입규제 규정이 SISCOMEX에 등록된 수입업체만 열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수

81) <http://antidumping.kita.net>

82) [www.kita.net](http://www.kita.net)

입허가 단계에서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한 통관지연이 발생함

- NCM Code 기재 오류로 인해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오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정확한 분류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제품 엔지니어를 통해 NCM 코드를 분류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2013년 브라질 기업의 반덤핑 혐의 제소는 총 54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sup>83)</sup>

〈표 IV-2〉 브라질 제소 및 규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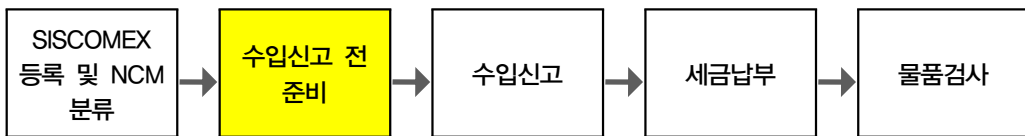
제소 년도	품목명	제소근거 (규제근거)	조사결과			14년 03월
			규제확정 및 형태	조사종결	조사중	
99	나일론 스텐레스강관	반덤핑 반덤핑	AD(01.6)	무혐의		규제종료
01	PVC	반덤핑		무혐의		
02	합성장섬유직물	긴급수입제한	Quota (03.1)			규제종료
03	PE테레프탈레이트 레진	반덤핑		무혐의		
07	PVC	반덤핑	AD (08.09.29)			규제중
10	합성고무(SBR) 강관 NBR 합성고무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AD(11.6)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11	열연강관	반덤핑		조사철회 무혐의		
12	타이어 스테인리스 냉연강관 나일론사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AD(14.01)			규제중 규제중 규제중
13	폴리프로필렌 레진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 엑상 엑폭시 수지	반덤핑 반덤핑 반덤핑	조사철회		○ ○	조사중 조사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현황

83) 브라질 개발통상산업부(MDIC) 공시 자료(2014)

- 2013년 총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치가 적용됨
- 개발통상산업부의 무역보호조치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8년 이후 2013년까지 총 396건의 품목이 덤핑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179개 품목에 반덤핑 조치가 적용됨

## 2.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서류상 화물의 정확한 무게 기입이 필수임
  - B/L 서류 작성 시 선적서류에 기재한 무게(Gross Weight)와 자중(Tare Weight)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함에 유의
  
- 선적조건이 다를지라도 서류에는 반드시 FOB(본선인도조건), Freight(운임)를 별도 명기해야 함
  - 예를 들어 산토스(Santos)항에 CFR(운임포함인도조건)일지라도 선적서류에는 반드시 FOB(Korea) 가격, Freight 가격을 표기해야 함
    - CFR Santos/ FOB(Korea) 100 sets 30,000(USD)/ Freight 2,500(USD) CFT Total 100 sets 32,500(USD)
  
- 수입자는 SISCOMEX 수입자 등록 후 수입허가 자동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이때 자신의 수입물품이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인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허가가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함

- 수입품목의 사양, HS 코드, 수량, 가격, 운송료 등 SISCOMEX가 요구하는 정보를 입력해야 함
- 특별 허가 요망 품목
  - 농림부 허가: 육류, 해산물, 식품, 우유, 낙농가공품, 달걀, 꿀, 과일, 야채 등
  - 환경부 허가: 천연 고무나 인조 고무
  - 위생감시국 허가: 비료, 화장품, 약품, 향수
- 브라질 국제무역부(DECEX)의 특별관리 제품 또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품목들은 선적 전 수입승인(LI) 취득이 필수임
  - 선적 전 선적서류 copy 송부 → 수입허가 승인(물품에 따라 Lead Time 상이) → 수입자 선적 지시 → 선적의 순서임
  - 수입허가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신고, 보세운송이 불가함
- ANVISA 허가는 브라질 현지업체가 아니면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업체의 경우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 대행업체를 통해서 허가 취득이 가능함<sup>84)</sup>
- 브라질의 도량형·산업 품질 관리기구(INMETRO) 인증제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www.inmetro.gov.br](http://www.inmetro.gov.br)에 접속 → 수입물품이 강제인증(certificacao compulsoria)과 자율인증(certificacao voluntaria) 중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지 판별 → 강제인증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인증서 제품 인증기관(OCP)을 접촉해서 기관에 따라 인증서 취득 신청<sup>85)</sup>함

## 나. 업무상 유의점

-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취득을 통한 행정규제가 많은 편으로, 선적 및 통관이 지연됨

---

84) p. 48 참조

85) 〈부록 IV〉 참조

- 자동수입허가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아서 이러한 지연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만약 선적한 후에 수입허가가 승인된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CIF 금액의 30% 또는 최소 500헤알 ~ 최대 5,000헤알 정도임
  
- ANVISA 실제 허가 취득기간은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 시장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GMP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전 실행 요청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 1,000개 의료기기 제조사가 사전 실행을 요청하고 있어 대기기간 단축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확인됨
  
- 일부 공무원 파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 과정에서의 시간적 및 물리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세관, 연방경찰 등 공무원들의 파업 사례로 예상치 못한 업무 차질이 다소 발생함
  - 관료주의 관행이 있는 곳도 존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프라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 브라질은 전체 수출 가운데 92%가 항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프라 투자 부족으로 항만 시설 현대화 작업이 늦어지는 등 인프라 건설 사업이 국제 수준보다 최소한 5~6개월 이상씩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998년 10월부터 수입허가 품목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위생검역, 정부관련 부처로부터의 품질 및 안전승인 의무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3. 수입신고 단계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 허가된 물품의 수입신고는 SISCOMEX를 통해 자동 처리되나, 사전에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에 신고해야 함
  - 상업송장, 적하목록 내용이 물품과 일치하도록 유념하여 작성해야 문제발생의 소지가 적음
- 선적서류 작성 시 제품의 기술설명과 같은 item description이 필요함
- 브라질에서 통관 대행업체(통관사)들이 통관위임절차를 밟아 세관 전산망(SISCOMEX)을 통해 수입신고를 대행함
  - 수입상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할 수 있으나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인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을 의뢰하는 것이 통상적임
  - 통관대리인을 위임하기 위해서는 세관 대응 위임장(Procuracao Receita Federal), 항만청 대응 위임장(Procuracao SUNAMAN), 농림수산부 대응 위임장(Procuracao MAPA), 위생검역국 위임장(Procuracao ANVISA) 총 4가지 서류를 작성 및 공증받아 통관사를 통해 당국 사무소에 제출해야 함<sup>86)</sup>

#### 나. 업무상 유의점

- 선적서류 및 수입신고 내용 관련 사소한 오류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준이 엄격하

86) 범한판토스 브라질 물류 담당자 인터뷰

고 Item Description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

- 실제 중량과 선적서류상 기재 중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현지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바이어도 이 과정에서 벌금 이외에 적기 제품 공급 등에 문제가 생겨 큰 불편을 겪게 됨
- 벌금액수는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가변적이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바이어 요청대로 수출면장과 B/L을 수정하여 재발송해야 함

□ 수입신고 시 정보오류가 발견될 경우 수입허가 수정이 필요하고 벌금이 부과됨

- 브라질 도착 후 수입신고 수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황색채널로 배정되어 서류심사를 받게 됨
- 수입허가 정보 수정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벌금 및 통관지연으로 인한 비용이 증가함

□ B/L상에 NCM(Nomenclatura Comum do Mercosul) 코드와 CNPJ(Cadastro Nacional de Pessoas Juridicas) 넘버 표기가 의무이며, 만약 기재가 안 되었으면 수입이 불가함

- NCM 코드는 정확한 상품분류를 위한 정보이며, CNPJ 넘버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입을 위한 전 과정에서 ID와 같은 역할을 함

□ 통관 전반에 있어 일관된 외국인 대외무역법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 제도로 외국인의 무역행위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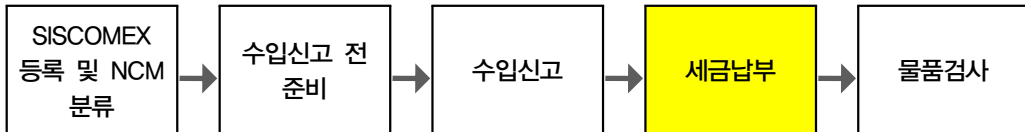
- 브라질 세관은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주(州)에 따라 이중통관제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법규 및 세제의 빈번한 개정으로 조세부담률이 크며 세무관리비용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됨

□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이 WTO 기준에 미달되거나, 내외국인 간에 차별 대우가 존재함

- 지적재산권 관련 선진국 기준에 미달하여 간혹 선진국과 마찰이 있기도 하며, 정부

구매 시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면 브라질 국내 기업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음

#### 4. 세금납부 단계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서류상 통관이 완료됨
  - 수입통관 비용으로 관세와 내국세(공업제품세, 주유통세, 사회보장세)를 포함해 창고세, 터미널 사용세, 상해운세, 세관사용인조합 기여금, SISCOMEX 사용료, 화물 운송비, 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수입신고(D.I) 완료와 동시에 수입 시 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며 그 외 제세금은 수입자 계좌에서 자동 인출됨
- 브라질 수입관세율 중 수입세의 조회를 통해 비용발생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음
  - [www.desenvolvimento.gov.br](http://www.desenvolvimento.gov.br)을 접속 → 위의 목록 중에 comercio exterior를 클릭 → 왼쪽에 있는 tarifa externo comon을 클릭 → 아래에 있는 arquivo de download를 클릭한 뒤 다운로드 함
- 브라질의 비토리아(ES), 마나우스(AM), 플로리아노폴리스(SC) 등의 주정부는 수입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현금이 아닌 Credit로 받는 형식이 대부분임

## 나. 업무상 유의점

- Tax ID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하게 됨
  - 브라질로 반입되는 모든 Dutiable Shipment(WPX) 화물의 통관을 위해서는 수취인의 Tax ID(기업용: CNPJ<sup>87)</sup> / 개인용: CPF / 개인용: CPF)가 필요함
  - AWB 및 Invoice에 반드시 Tax ID를 기재하여야 하며, Data Entry시에도 입력해야함
  - 통관 시 수취인과 원활히 연락할 수 있도록 반드시 AWB 및 Invoice에 수취인의 정확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함
  
- 브라질 통상개발산업부(MDIC) 산하 대외무역위원회(Camex)가 산업용 기계장비 95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기존 4~18%에서 2%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소하기로 함<sup>88)</sup>
  - 감면대상은 브라질에서 생산되지 않은 해외 구매 자본재 95개 품목임
  - 해당 품목은 자동차 부품, 채광, 건설장비 등임
  - 수입산 자본재는 국내에 유사품이 없어야 하며 수입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통상개발산업부(MDIC) 생산발전국(SDP)의 책임하에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산업 단지의 현대화와 확장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자본재 수입을 일시적으로 용이하게 해 기업의 생산경쟁력 제고가 목적임
  
- 주(州)정부별로 세금혜택이 달라 도착항 확인이 중요함
  
- 브라질의 관세 환급은 3가지 형태인데 환급은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87) National Directory of Legal Ent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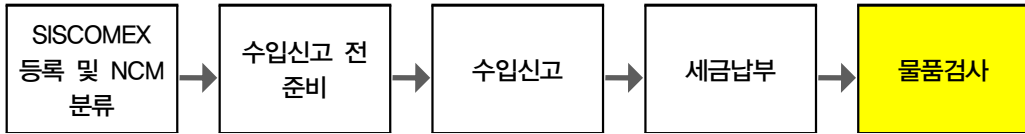
88) Resolução Camex No.23

〈표 IV-3〉 자본재 수입관세 특별감면제도 해당 품목 HS 코드

연번	HS 코드	연번	HS 코드
1	8207.30.00	30	8465.92.90
2	8402.11.00	31	8465.93.90
3	8405.10.00	32	8465.99.00
4	8414.80.19	33	8468.20.00
5	8417.10.90	34	8474.20.10
6	8417.80.10	35	8474.20.90
7	8419.39.00	36	8474.80.10
8	8419.89.99	37	8474.80.90
9	8421.19.90	38	8474.90.00
10	8421.29.90	39	8477.20.10
11	8422.40.90	40	8479.40.00
12	8424.30.90	41	8479.82.10
13	8424.89.90	42	8479.89.11
14	8424.90.90	43	8479.89.99
15	8427.10.90	44	8480.60.00
16	8427.20.10	45	8486.40.00
17	8427.20.90	46	8514.40.00
18	8428.39.90	47	8515.39.00
19	8433.59.90	48	8515.80.90
20	8438.50.00	49	8602.10.00
21	8439.99.90	50	9018.19.80
22	8443.39.10	51	9024.10.90
23	8454.30.90	52	9027.50.10
24	8458.11.99	53	9027.50.20
25	8459.31.00	54	9027.80.99
26	8460.21.00	55	9027.90.99
27	8462.10.90	56	9031.49.90
28	8462.21.00	57	9031.80.99
29	8464.10.00		

주: 연번은 57개이나 동일한 코드 내 사양과 특징이 다른 다수 제품이 존재. 해당 전체 제품은 95개  
 자료: 통상개발산업부(MDIC)

## 5. 물품검사 단계



### 가. 통관 절차상 특이사항

- 최소가격제 등의 비관세장벽을 공지 없이 불시에 설치하는 등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실시하는 품목이 많아, 세이프가드나 반덤핑조치의 위험이 따름
- 물품검사 4채널(녹, 황, 적, 회) 중 검사 강도가 가장 큰 회색채널에 대해 세관은 물품검사 뿐 아니라 수입회사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가짐
  - 선적서류와 물품의 일치 여부를 항상 확인해야 하며, 수입물품의 포장 단위별로 상세 물품정보가 기입되어야 강도 높은 검사의 시행을 면할 수 있음
- 수입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특별한 세금 탈루 및 세관 추징 내역이 없을 경우 황색(Amarelo) 채널을 배정받기 시작함
- 브라질 세관은 많은 수입품에 저가 신고(Under Invoicing)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검사 시 물품가격 증명 및 재평가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세관원이 수입제품의 가격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8일 기간 내에 새로운 관세가격을 책정할 수 있음
  - 수입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만약 양측 모두 이의제기 시 통관에 기본 38일이 소요됨
- 브라질은 수입통관 완료 후 세관 시스템에 접속해 흔히 노파 피스칼(Nota Fiscal)을 발행

해 보세구역에서 화물 반출 시 세관에 증명해야 함

- Nota Fiscal이란 수입제품 입고 전자 세금 계산서로 수입자가 직접 발행함
  - 모든 수입 관세와 부가세의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상업송장과 선하증권상 수입자 즉 수입화주임
- 물품 검사 후 NF가 생성되며 이후 물품반출과정을 거쳐 내국품이 됨

## 나. 업무상 유의점

-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저가신고 물품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전수검사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짐
  - 수입이 빈번한 제품(직물류)에 대해서는 통관 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음
- 검사 채널은 무작위 배정이 원칙이나, 무역업체의 수출입 이력이 약 1년 이하인 경우 화물 대부분이 적색(Vermelho) 채널에 배정됨
  - 적색 채널의 경우 서류와 현물 검사를 받게 됨
- 일방적 무역 제재조치의 경우 무역 분규 발생 소지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통관검사의 강화를 통해 사실상 수입을 억제하는 관행이 많음
  - 최근 브라질 세관에서는 특송 화물에 대한 통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다수 화물의 통관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현물 검색 시 물품포장 별로 Packing List나 내용물에 대한 표시가 없을 경우 전수검사를 시행하므로 주의해야 함
  - 전수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Packing list 미제출로 간주해 건당 500헤알의 벌금을 부과함

## 참고문헌

- 국립산업재산권연구소, [www.inpi.gov.br](http://www.inpi.gov.br)
- 대한민국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정보 브라질,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am.net](http://www.korcham.net)
- 사회경제개발은행, [www.bndes.gob.br](http://www.bndes.gob.br)
- 세계무역기구, [www.wto.org](http://www.wto.org)
- 양자협약사무국, [www.bilaterals.org](http://www.bilaterals.org)
- 외교통상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브라질」, 2014
- 브라질 과학기술연구기관, [www.serpro.gob.br](http://www.serpro.gob.br)
- 브라질주재 대한민국대사관, [www.bra-brasilia.mofat.go.kr](http://www.bra-brasilia.mofat.go.kr)
- 브라질 개발상공부, [www.mdic.gov.br](http://www.mdic.gov.br)
- 브라질 연방조세청, [www.receita.fazenda.gob.br](http://www.receita.fazenda.gob.br)
- 브라질 대외무역국, [www.secex.gob.br](http://www.secex.gob.br)
- 브라질 중앙은행, [www.bcb.gob.br](http://www.bcb.gob.br)
- 한국수출입은행, 「브라질: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2014
- 한국은행, 「브라질 경제의 주요 현안과 전망」, 2014
- 해외진출정보시스템, [www.ois.go.kr](http://www.ois.go.kr)
- 해외진출 정보시스템 국가정보, [www.ois.go.kr](http://www.ois.go.kr)
- KOTRA, 「브라질 투자핵심가이드」, 2013
- The World Bank Group, *Doing Business 2014*, 2014
-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 〈부록 I〉 비즈니스 팁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영주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있음
  - 브라질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사 승인 사례가 거의 없음
  - 따라서 현지사업을 위해서는 현지법인을 설치해야 하는데 법인설립을 해서는 영주비자를 받아야 현지경영이 가능함
  -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본사 파견 직원 1인당 20만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법안이 있었으나, 이는 5만달러로 인하됨. 그러나 2년 내에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므로 여전히 어려움은 산재해 있음
  
- 현지직원 고용 의무가 있음
  - 브라질 노동법상 외국기업이 현지직원 고용 시, 임금의 총합 또는 직원 총합의 2/3를 브라질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나머지 1/3은 외국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2/3조항을 준수해야 함
  - 즉 1명의 본사직원(외국인) 파견 시 2/3에 해당하는 2명의 현지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현지직원이 많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부담이 없으나, 현지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음
  
- 고용주에 불리한 노동법으로 노무관리가 매우 어려움
  - 직원을 고용함에 따른 부가 비용이 매우 큼
    -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각종 사회보장세, 연금, 소득세, 상여금, 휴가비, 정기 급여 인상 등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함
  - 해고 시에도 퇴직벌금 및 퇴직부대비용이 발생하며 늘 소송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브라질은 노동법 자체가 노동자와 약자 위주로 되어 있어, 소송에 걸릴 경우 노동자가 거의 대부분 승소하게끔 되어 있음
    - 소송비용(인지대 등)은 패소한 측에서 상대방 비용까지 내는 게 원칙이나 노동법에는 해당이 안 돼 패소할 경우 노동자가 불리하게 될 사항이 전혀 없음. 이에 따라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해고된 노동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경우도 매우 흔함
  - 노동 계약상에서도 당사자 간의 자치주의(합의) 원칙이 제한되어 있어, 외국 기업들은 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움
- 치안이 불안함
- 상파울루 및 리우 등 대도시 치안이 불안하여 주재원들이 강도 또는 납치를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현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기업 또는 주택가만이라도 치안 인력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함
- 브라질이 시장개방을 한 후 발생하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 문제와 이에 따른 엄청난 물류 비용, 낙후된 부품산업에 기인하는 안정된 부품조달의 문제와 일관성이 없는 정부의 수출입정책 등도 또 다른 애로 사항으로 꼽히고 있음
- 브라질의 경기지수가 너무 단기적이고 불규칙한 사이클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장기투자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임
- 불규칙한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기 힘들고 판매망이나 A/S망의 확보 및 기업의 입맛에 맞는 현지 전문 인력을 키우고 현지상황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의 단기투자로는 성공적인 정착을 하는 것이 어려움
- 복장
-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나 가족기업의 기업인들은 비교적 느슨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나, 비즈니스맨은 대부분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씀

## □ 인사

- 브라질 사람과 비즈니스 만남 시에는 악수를 하는 것이 정석이며 평소에는 여성과 인사 시 양 볼에 키스를 하고, 안면이 있는 남성끼리는 어깨나 등을 툭툭 치거나 반포옹을 함. 또한 처음 본 사람을 낮설어 하는 경우가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보면 금세 친근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낯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음
- 회의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회의가 끝날 때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함
-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브라질 측에서 먼저 식사 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약속 없이 회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따라서 회의 종료 후 먼저 회의장을 나서지 말고 상대방의 태도를 관망하는 것이 좋음. 저녁식사의 초대는 상담이 잘 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식사를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음

## □ 선물

- 첫 만남에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으며 대신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음.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함
-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은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아주 좋으나, 턱없이 비싼 선물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금해야 함

## □ 약속

- 브라질 사람들은 약속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것에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편임.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리언 타임으로 생각하고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음
- 브라질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 구두약속을 한 후 가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 적어도 1~2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 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함

□ 식사 에티켓

- 저녁 식사 시간이 9시나 10시 이후인 경우가 많아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식사 중에는 입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임
- 술을 즐겨 마시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임. 까이삐리냐(Caipirinha)는 사탕수수로 만든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임
- 술 한잔 시켜놓고 한 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므로 술을 강권하면 상대방이 곤욕스러워 할 수 있음

□ 문화적 금기사항

-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피는 동작은 한국에서는 OK 표시지만, 브라질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시로 이해됨
- 엄지 손가락을 둘째와 셋째 사이에 넣어 주먹을 쥐는 행동은 한국에서는 욕으로 간주되나 브라질에서 Figa라고 불리며, 이러한 동작은 ‘행운을 빈다’는 의미가 담겨 있음
- 중남미 국가 중 선두 국가로서의 자긍심이 강하고 미국과도 대등하게 생각하는 등 자존심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브라질 비하식의 발언 또는 타국과의 비교는 삼가게 좋고, Brazil을 일컬을 때 영어식으로 발음하기 보다는 포르투갈어식으로 Brasil (브라지우)라고 하면 매우 좋아함

□ 이민국가라는 점을 잊지 말 것

- 상파울루에서 상권은 주로 이탈리아계, 독일계, 중동계, 유대계, 스페인계가 장악하고 있고 우리가 상대하는 기업인들도 대부분 이들로 봐도 무방함
- 따라서 중동계 바이어와 상담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편든다거나 이탈리아계 바이어

와 만나면서 이탈리아인들의 단점을 얘기하지 말아야 함

□ 외상거래 비중이 높음

-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고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함
-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함

## 〈부록 Ⅱ〉 주요 유관 기관 정보

■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웹페이지	<a href="http://bra-brasil.mofat.go.kr">http://bra-brasil.mofat.go.kr</a>
주소	SEN-Avenida Das Nacoes Lote 14, 70436-900, Brasilia-DF, Brasil
전화번호	(55-61) 3321-2500 *휴무 비상전화 (55-61) 9962-8197 또는 9962-9993
팩스번호	(55-61) 3321-2508

■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웹페이지	<a href="http://bra-saopaulo.mofat.go.kr">http://bra-saopaulo.mofat.go.kr</a>
주소	Av. Paulista 37, 9 andar cj. 91 - Bela Vista, Sao Paulo - SP Brasil 01311-902
전화번호	(55-11) 3141-1278
팩스번호	(55-11) 3141-1279
이메일	<a href="mailto:cscoreia@mofat.go.kr">cscoreia@mofat.go.kr</a>

■ KOTRA 상파울루 무역관(KBC)	
웹페이지	<a href="http://www.kotra.or.kr">www.kotra.or.kr</a> - 해외무역관 - 상파울루 무역관
주소	Alameda Santos 700, CONJ 81,82, Ed.Trianon Corporate, CEP 01418-100 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zil
전화번호	TEL. 55-11-3175-3030
팩스번호	FAX. 55-11-3175-3031
이메일	<a href="mailto:saopaulo@kotra.com.br">saopaulo@kotra.com.br</a>

■ 브라질 재무부(Ministério da Fazenda)	
웹페이지	<a href="http://www.fazenda.gov.br">http://www.fazenda.gov.br</a>
주소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P, 70048-900, Brasília-DF
전화번호	(55-61) 3412-2000/3000

■ 브라질 경제사회 개발은행(BNDES, Brazilian develop bank)	
주소	Rio de Janeiro - RJ - Brasil - 20031-917
전화번호	(55-21) 2172-7447

■ 상파울로주 경제인 연맹	
웹페이지	<a href="http://www.fiesp.com.br">http://www.fiesp.com.br</a>
주소	Av. Paulista, 1313, São Paulo/SP - CEP: 01311-923
전화번호	(55-11) 3549-4499
이메일	<a href="mailto:relacionamento@fiesp.org.br">relacionamento@fiesp.org.br</a>

■ 한국수출보험공사 상파울루지사	
주소	Alameda Santos, 880, 5º Andar Conj. 52/53 CEP:01418-100-Cerqueira Cesar, Sao Paulo SP, Brasil
전화번호	(55-11) 3284-1105, 3285-1951
팩스번호	(55-11) 3284-4081
이메일	E-Mail Address : <a href="mailto:keicsp@hotmail.com">keicsp@hotmail.com</a>

■ 상공회의소	
웹페이지	<a href="http://www.kocham.com.br">www.kocham.com.br</a>
주소	R. Tres Rios, 263, Bom Retiro Sao Paulo, SP01123-000
전화번호	(55-11) 3326-9562

■ 한국산업은행(KDB) 브라질	
주소	Av. Brigadeiro Faria Lima, 3400 Ed. Faria Lima Financial Center 15 ° and, Conj.152 CEP:04538-132, Itaim Bibi, Sao Paulo-SP-Brasil
전화번호	(55-11) 2138-0000
팩스번호	(55-11) 2138-0150

■ 브라질 한인회	
웹페이지	www.haninbrasil.com.br
주소	R.dos Parecis,107, Cambuci Sao Paulo, SP 01527-030
전화번호	(55-11) 3209-9042, (55-11) 3399-2768
팩스번호	(55-11) 3208-6860
이메일	haninbrazil@hanmail.net webmaster@haninbrazil.com.br

■ 브라질 개발통상 상공부(Ministério do Desenvolvimento, Indústria e Comércio Exterior)	
웹페이지	http://www.mdic.gov.br
주소	Esplanada dos Ministérios, Bloco "J" Brasília, DF, 70053-900
전화번호	(55-61) 2027-7000
팩스번호	(55-61) 2027-7445
이메일	decom@mdic.gov.br

■ ANVISA(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	
웹페이지	http://www.anvisa.gov.br
주소	SEPN 515, Bl.B - Edifício Ômega Cidade: Brasília -DF, CEP: 70.770-502, Brazil
전화번호	(55-61) 3448-1000
이메일	infovisa@anvisa.gov.br

## 〈부록 Ⅲ〉 통관 관련 법령 정보

### □ 선적서류 관련 법령

○ Article 557. The commercial invoice must include the following:

- I. name and address, complete the exporter;
- II. name and address, complete the importer and, where applicable, the purchaser or encomendante, p p, pp, p predetermined;
- III. Specification of goods in Portuguese or official language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or, if in another language, a translation in English, at the discretion of the customs authority, containing the individual and commercial names, indicating the elements essential to its unambiguous identification;
- IV. marks, numbers and, if any, reference number of the packages;
- V.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VI. gross weight of packages, it being understood, as such, the goods with all their containers, packaging and other packaging;
- VII. Net weight, considered the merchandise free of any and all packaging;
- VIII. country of origin, which means, there is one where the merchandise was produced or where it underwent its last substantial transformation;
- IX. the country of purchase, considered as one from which the goods were purchased to be exported to Brazil, regardless of country of origin of goods or its components;
- X. country of origin, so that where he was considered a commodity at the time of its acquisition;
- XI. unit price and total for each type of goods, and if the amount and nature of

discounts and rebates;

XII. cost of transport referred to in Item I of art. 77 and other expenses relating to the goods specified in the invoice;

XIII Terms and currency of payment;

XIV. a term of condition of sale (INCOTERM).

○ Article 558. Items covered by a single invoice will have a single brand and will be numbered, sealed the repetition of numbers.

○ Article 558. Items covered by a single invoice will have a single brand and will be numbered, sealed the repetition of numbers.

§ It is first admitted the use of numerals in the title tag, long as they are within a geometric figure, keeping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in § 2 on the numbering of volumes.

§ The second number in each volume will be placed next to the brand or geometric figure that contains it.

§ 3 Numbering is not required:

I . in the case of goods normally imported in bulk and shipped loose or in bundles, since it is not packaged, and

II . in the case of batches of the same commodity, fifty or more volumes, since the whole batch consists of uniform volumes, with the same y, y , , weight and measure.

○ Article 559. The first copy of the invoice will always be original and may be issued, as well as other means, by any means.

○ Article 560. Parallels the commercial invoice, for all practical purposes, knowledge of cargo by air, since it included the signs of quantity, type and value of the goods relating thereto (Decree Law No. 37 of 1966, art. 46, § first, with the wording amended by Decree-Law No 2472, 1988, art. 2nd).

○ Article 561. Can be established by the regulations of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f Brazil, the sight of the request of the Foreign Trade Chamber, the requirement of a visa on commercial invoice (Decree-Law No. 37 of 1966, art. 46, § 2, with the wording amended by Decree-Law No 2472, 1988, art. 2nd).

○ Article 562.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of Brazil might have in relation to the commercial invoice, to:

- I . cases of non-requirement;
- II . cases of waiver submission for purposes of customs clearance, in which case the importer must keep the document in his possession, the statutory limitation period, the disposal of the customs control;
- III . Number of lanes that must be issued and their disposal;
- IV . Other items to be given,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Art. 557.

□ 수입금지 · 제한 및 수입허가 관련 법령

Prohibitions		
Wines	Prohibited if transported in bottles of more than 5 litres	Article 26 of Law No. 7,678 of 8 November 1988
Grapes and grape juice	Foreign grapes or grape juice may not be used in the production of wine and its derivative products	Article 57 of Decree No. 99,066 of 8 march 1990
Toys that replicate firearms	Prohibited in all circumstances (domestic production is also prohibited)	Article 26 of Law No. 10,826 of 22 December 2003
Weapons and ammunitions	Private importation prohibited if the goods are intended for exclusive use of the army	Decree No. 2,998 of 23 March 1999
Endangered animals and plants	Animals and plants listed as endangered by CITES	Decree No. 3,607 of 21 September 2001
Used tyres	Granting of non-automatic licences prohibited, including if the tyres are for use as raw material; imports of retreaded tyres from other MERCOSUR member countries are allowed	Article 41 of Portaria SECEX No.36of22November2007

Used consumer goods	Granting of non-automatic licences prohibited, except for imports by the State or educational and scientific institutions	Article 27 of Portaria SECEX No. 235of7December2006
<b>Licensing requirements</b>		
Imports under drawback scheme	Automatic licence	Portaria SECEX No. 36 of 22November2007
Used goods	Non-automatic licence required for imports of all used goods, with the exception of packaging material used in temporary importation or re-importation	Portaria SECEX No. 36 of 22 November 2007
Weapons and products made for warlike purposes	Non-automatic licence	Decree No. 3,665 of 20 November 2000
Goods restricted by a UN resolution	Non-automatic licence required for specific goods whose trade is restricted by a UN resolution	Portaria SECEX No. 36 of 22November2007
Scheduled chemicals controlled under the Chemical Weapons Convention	Non-automatic licence	Decree No. 2,977 of 1March1999.

## □ 지식재산보호 법률(2008년 기준)

Patents			
Industrial Property Law No. 9,279 of 14 May 1996; Law No. 10,196 of 2001. Decree No. 4,830/2003			
Any invention that is new and involves an inventive step, that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20 years from the date of filing	Substances, matter, mixtures, and processes for their modification, biological processes and natural living material; compulsory licenses may be granted in cases of national emergency or in the public interest	Protection for IPRs, taking into account the country's social interest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LawNo.10,196of2001: prior approval from the National Sanitary Surveillance Agency (ANVISA) for the granting of patents for medicines and its processes; DecreeNo.4,830/2003a mendsDecreeNo.3,201 of6October1999,which providesforthegrantofc ompulsorylicencesinca sesofnationalememergenc yorinthepublicinterest
Industrial designs			
Industrial Property Law, Normative Act No, 129 of 1997 Resolution No. 076 of 2000. Normative Act No. 161 of 2002			
New ornamental form of an object or new ornamental arrangement of lines or colours whose visual configuration is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10 years from date of filing; which can be extended for 3 successive 5-year periods	Not registrable when contrary to morals and good customs or when it is an ordinary shape of an object determined essentially by technical or functional considerations	Resolution No. 076/2000 provides for the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Utility models			
Industrial Property Law No. 9,279 of 14 May 1996.			
New invention in a new shape or	15 years from date of filing	Substances, matter, mixtures, and	

arrangement, capable of industrial application		processes for their modification, biological processes and natural living material	
Trade marks			
Industrial Property Law, Normative Acts No. 83, 159 and 160 of 2001, Normative Act No. 110 of 2004			
Visually perceptible sign that distinguishes or certifies a good or service	10 years renewable for equal successive periods	Crests, armorial bearings, emblems, flags, national and international monuments	Normative Act 83/2001 provides for registration forms in accordance with the goods and service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system; Normative Act No. 110 of 2004 establishes rules for the recognition of famous marks
Geographic indications			
Industrial Property Law, Normative Act No. 075 of 2000			
Name of a country or region used to designate a service or good whose characteristics or reputation are derived from the country or region.	Undetermined		Normative Act No. 075 of 2000 establishes conditions for the registration of geographic indications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Law No. 9,610 of 19February1998; Law No. 10,695 of July 2003			
Text of literary, scientific or artistic works; musical compositions, audiovisual works, drawings, paintings, photographic works. No registration necessary	Life of the author plus 70 years as the general term of protection; term varies according to the type or nature of the work	No authorization required where the name of the author is cited in the reproduction of current affairs, or the copier uses for educational purposes without intent for financial gain.	Protects the work of the author and of foreigners resident outside Brazil; Law No. 10,695 amends the Criminal Code to include stiffer sanctions for copyright violations and to improve criminal procedures

## 〈부록 IV〉 인증 주관기관 및 시험기관

- INMETRO(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Normalização e Qualidade Industrial): 도량형 및 품질 관리국
  - 동 기관은 통상산업개발부 소속으로 본부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에 위치
  - 각종 제품의 품질검사를 주관하며, 기준에 합당한 제품에 한해서 품질인증서를 발행함
  - 동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 각종 제품의 물리 화학적 도량형을 연구, 표준 도량형을 규정
    - 각 업체에게 제품 관련 표준규정을 통보, 업체로 하여금 항상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문 인증기관으로 활동하기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각종 테스트를 거친 후 공인된 인증기관 자격을 부여하며 인증 관련 기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품질 인증: INMETRO의 규정에 따른 품질 인증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검수 시험 결과 검토 및 품질 인정 공인된 기관을 통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에게 품질보증실(Seal) 부착
    - 본부 주소: Rua Santa Alexandrina, 416- 5º andar, Rio Comprido - Rio de Janeiro - RJ, CEP: 20261-232, Brazil
    - 전화: 0800- 285-1818, FAX: (21) 2563-2970
    - E-Mail: homepage@inmetro.com.br
    - Site: www.inmetro.gov.br
  
- IPEM(Istituto de Pesos e Medidas): 도량형, 품질관리국
  - 주정부 소속 기관으로 INMETRO와 공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INMETRO와 더불어 각종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격 등을 검사, 관리하는 기관으로

로 각 주별로 별도의 기관이 있음

○ 상파울루 주의 경우 IPEM-SP(IPEM 상파울루 지국)이 있음

- IPEM- SP 주소: Rua Santa Cruz, nº 1.922 - 7º andar - Vila, Cep 04122-002  
Gumerindo, São Paulo, SP, Brazil
- Fone/Fax: (55-11) 5085.2602 / 5085.2603
- E-mail: gabinete-ipem@ipem.sp.gov.br
- Site: www.ipem.sp.gov.br

□ INMETRO로부터 허가를 취득한 국내 외 전문 인증기관

○ OCS(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Qualidade)

- 특징: 시스템의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ABNT, ISO9001
- 기관 수: 브라질(29), 아르헨티나(1), 베네수엘라(1), 우루과이(2), 미국(1)

○ OCP(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de Produto)

- 특징: 제품 품질 인증
- 적용 규정: 제품에 따라 각종 국내 및 해외 규정을 적용
- 기관 수: 브라질(50), 아르헨티나(3), 코스타리카(1), 베네수엘라(1)

○ OCA(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Ambiental)

- 특징: 환경관리 시스템 인증
- 적용 규정: NBR ISO 14001
- 기관 수: 브라질(17), 아르헨티나(1), 미국(1), 우루과이(1)

○ OHC(Organismos de Certificação de Sistema de Gestão da Análise de Perigos e Pontos Críticos de Controle)

- 특징: 식품안전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ABNT NBR 14900
- 기관 수: 브라질(1)

○ OPC(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essoas)

- 특징: 인력품질 인증

- 적용 규정: SBAC
- 기관 수: 브라질(7)
- OCF(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Manejo de Florestas)
  - 특징: 삼림관리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NBR 14789
  - 기관 수: 브라질(2)
- OCE(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NBR 15100)
  - 특징: 우주공학 관련 프로젝트, 건축물, 서비스 등의 품질인증
  - 적용 규정: NBR 15100
  - 기관 수: 브라질(3)
- OCQ(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QS9000)
  - 특징: QS 9000 관련 인증
  - 적용 규정: QS 9000
  - 기관 수: 브라질(11), 아르헨티나(1)
- OCO(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Sistemas de Gestão da Qualidade de Empresas de Serviços e Obras na Construção Civil (SiAC/PBQP-H))
  - 특징: 건축공사 관련 품질인증
  - 적용 규정: PBQP-H
  - 기관 수: 브라질(9)
- ANATEL(Agencia Nacional de Telecomunicações): 국가정보통신국
  - 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으로 통신 기기 관련 각종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함
  - 통신기기 업자들은 동 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관 및 시험 기관을 통해 품질인증 및 등록 절차를 마쳐야 브라질 시장 내 유통이 가능함
    - Anatel - 본부 주소: SAUS Quadra 06 Blocos C, E, F e H, CEP 70.070-940 - Brasília - DF, Brazil

– 전화: (55-61) 2312-2000, Fax: (55-61) 2312-2264

– Anatel - 상파울루 지국 주소: Rua Vergueiro, 3073, Vila Mariana - CEP  
04101-300 São Paulo/SP 전화: (55-11) 2104-8800, FAX: (55-11) 2104-8815

## 〈부록 V〉 재무부 조직도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브라질

---

2014년 12월 23일 인쇄

2014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옥 동 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65-4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